

석사학위논문

조선후기 제주도 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장 윤 희

2008년 2월

조선후기 제주도 진상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권 인 혁

장 윤 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장윤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8년 2월

The Study of ‘Jinsang’ from Jeju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Jang Yun-Hee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IN-HYU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8.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of ‘Jinsang’ from Jeju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national finance in Joseon Dynasty consisted largely of ‘Jeonse (land fee)’, ‘Yangyeok(compulsory labor)’, and ‘Gongnap(tributary payment)’. The tributary payment divided into ‘Gongmul(specified offering)’ and ‘Jinsang(presents to the palace)’.

First, Gongmul has two meanings as a kind of payment: offering objects instead of another tax items and local products in kind as previously designated.

The latter one called Jinsang is to present the native products from each village to the diverse palaces. Among them, Jinsang is only to be presented to the King’s palace and the Queen’s palace. Ones except them were called Gongsang to be present to the other palaces. In addition, offering to the gods was called Cheonshin for the rituals in ‘Jongmyo(the ancestral shrine of the royal family)’ ‘Wonmyo(the repeatedly built shrine)’, and ‘Byeolmyo(the separately built shrine)’.

Jinsang largely includes Gongmul, Gongsang, and Cheonshin and has the same meaning as the Gongheon which presents offering from the bottom to the top.

Jinsang first conducted since the Goryeo Dynasty was improved in Joseon Dynasty and had continued to eve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While Gongmul was levied primarily to meet the deman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Jinsang was unlike Gongmul, the concept of

offering only to be presented to the king. Jinsang was for local governors such as each local provincial governor, and district ministers including the heads of arms and war horses and the naval forces to present offering to each department in the palace as the symbol of loyalty.

The truth is that Jinsang was a kind of compulsory duty like Jeonse and Gongmul to be levied on local households which was seriously strict because it was for the king and the royal shrine. And also its variety and magnitude had been increasingly extended with the change of times.

What levied on Jeju among various Jinsang were food ingredients, women's merchandise items, materials for sacrificial rites, and medicinal stuff. And there were also offering for the central government periodically as well as for the local government in cases of the local governor and other subordinate governor's new arrival and remaining.

Jeju had had few items of Jinsang before the third year of Sejong in 1421 in the early age of Joseon Dynasty: five kinds of tangerines, two kinds of medicines, four kinds of abalones, and cuttlefish.

Since the Sejong government when the list for Jinsang became completed, the Jinsang items from Jeju were systematically presented being sealed, in particular among them, the principal products of Jeju such as horses and cows, tangerines, seafood, and medicinal stuff were sealed and presented up to the enormous amount.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types and amount of Jinsang from Jeju varied and were numerous respectively. Since the enforcement of 'DaedongBeop(the law to force grain to be presented instead of products in kind)' in the middle period of Joseon Dynasty,

even though the public offering payment had changed to grain payment nationwide, there was no changes to offer products in kind in Jeju. Rather,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Jinsang items from Jeju varied caused by systematical operation.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large numbers of Jinsang items, officials in charge would avoid their job not overcoming the overwhelming tasks. And except charged officials, Jeju residents also suffered from exploitations caused by too many Jinsang items imposed on them.

Additionally, there were a lot of troubles of Jeju people: re-imposition caused by that drifted or sank tribute vessels would make 'Jinsang' items insufficient and spoiled, the pressure to levy Jinsang products despite during the farming season, and the exploitation by the officials in charge under the plea of public tasks.

Accordingly,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Jinsang in Jeju yet occupied the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tax system as well as became a bone of manifold evil practices in Jeju residents' livelihood.

목 차

Abstract

| | |
|-----------------------------|----|
| I. 서 론 | 1 |
| II. 진상의 의미와 제주 진상의 종류 | 4 |
| 1. 진상의 의미 | 4 |
| 2. 제주지역 진상의 종류와 특징 | 8 |
| III. 우마진상의 실태와 폐해 | 19 |
| 1. 우마진상의 실태 | 19 |
| 2. 우마진상에 따른 폐해 | 28 |
| IV. 감귤진상의 실상 | 33 |
| 1. 감귤진상의 내역 | 33 |
| 2. 감귤진상에 의한 도민의 부담 | 39 |
| V. 해산물과 약재진상의 추이 | 45 |
| 1. 해산물 진상의 실태 | 45 |
| 2. 약재진상의 실태 | 54 |
| VI. 맺음말 | 64 |
| 참고문헌 | 67 |

<표> 목차

| | |
|--|----|
| < 표 1 > 17세기 제주 진상 내역 | 13 |
| < 표 2 > 18세기 말 제주 진상 내역 | 16 |
| < 표 3 > 19세기 초 제주 진상 내역 | 17 |
| < 표 4 > 제주 마필(馬匹)의 시기별 현황 | 21 |
| < 표 5 > 제주 우수(牛首)의 시기별 현황 | 22 |
| < 표 6 > 조선후기 제주 우마 진상의 현황 | 23 |
| < 표 7 > 조선후기 제주 우마진상의 종류와 수량 | 26 |
| < 표 8 > 제주후기 감귤봉진과 황감제 시행 현황 | 34 |
| < 표 9 > 감귤진상의 종류와 수량 | 37 |
| < 표 10 > 조선후기 해산물 봉진의 현황 | 46 |
| < 표 11 > 해산물의 진상물목과 수량 | 48 |
| < 표 12 > 『세종실록지리지』로 본 전국 약재 분포의 추이 | 56 |
| < 표 13 > 조선후기 약재 진상의 종류와 수량 | 57 |

I. 서론

조선왕조의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전세와 양역, 그리고 공납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공납은 다시 공물과 진상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공물은 상납물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뜻이 있다. 다른 세목에 해당하는 것을 상납물로서 충당하도록 규정한 것과 원래부터 공물로 정해진 즉 각지의 토산물을 바치는 토공(土貢)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진상(進上)은 지방의 각 고을에서 궁중 여러 궁전에 토산물을 바치는 것으로 대전이나 왕비전에 바치는 것만을 진상이라고 하고 그 밖의 각 궁전에 바치는 것은 공상(供上)이라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종묘나 원묘, 별묘 등의 제향용은 천신(薦新)이라고 하였다. 진상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위의 공물, 공상, 천신 모두를 포괄하며, 공헌(貢獻)과 같은 의미로서, 봉상(捧上)의 뜻을 가지고 아래로부터 위로 진헌하는 것을 말한다.¹⁾

그런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물의 대부분은 미곡으로 대신하는 대납제가 도입된 후 크게 변화하였으나, 진상은 지방관들이 각 지방의 산물을 중앙에 진헌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이념적으로는 조세적인 성격이 매우 약했고, 대동법으로 크게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현물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현물납을 기본으로 하는 진상은 지방차원의 수탈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진상은 조세와는 달리 진상물에 대한 민호부담의 규정이 없었으며, 물건은 지방관들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상물의 대부분은 일반 민호의 부담으로 징수되었다.²⁾ 특히 제주는 토지가 척박하여 제주에서 거두어들이는 전결세는 거의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생산량이 적어 흉년이나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진휼곡을 육지로부터 운송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정도였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재정수입과 관련하여 균역세나 대동세를 요구할 수도 없었다.³⁾

1) 김동진, 「제주도의 공물진헌에 대한 고찰-조선왕조를 중심으로-」 『제주사학』 창간호(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1985), 29~30쪽 ; 박찬식, 「19세기 제주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 16호(탐라문화연구소, 1996).

2)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국학자료원, 1999).

이와 같이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에서는 전결세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삼정의 문제와 크게 연관되지 못하였다. 다만 제주에서는 중앙에 상납하는 공물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진상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기존의 연구가 다소 있지만 조선 후기 대동법의 실시와 영향에 주목하여 조선 전 지역을 다루었기에 지방, 특히 제주의 진상에 관한 면은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다.⁴⁾

제주도의 진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김동전(1985) 『제주도의 공물 진헌에 대한 고찰』과 박찬식(1996)의 『19세기 제주지역 진상의 실태』가 있다.

김동전은 조선시대 말, 감귤, 약재진상 등 제주도의 진상에 대한 재규정과 내용 그리고 제주도민의 진상부담과 폐단에 대하여 논하였고, 박찬식은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시대별로 제주지역의 진상물 품목과 수량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고창석(1990)의 『제주의 공납물』과 같은 해 발표한 『감귤진상과 황감제』를 통해 조선시대 진상의 종류, 제주의 공물과 진상물에 대하여 정리해 놓았다.

박찬식(2000)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에는 조선전·후기 제주 진상의 품목, 수량과 더불어 말과 감귤의 봉진 절차를 같이 다루고 있고, 나가모리 미쓰노부(2003)의 『조선후기 제주 진상물 조달과 수송』에는 진상물이 제주목 관아에서 상납된 후에 서울까지 수송되는 과정을 다루어 해상교통 측면이 보장되고 있다. 양진석(2004)의 『18, 19세기 제주의 수취제도와 특징』에서는 제주 진상물과 수취제도에 관련하여 제주지역만 지닌 독특한 부세연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3) 제주지역의 농경조건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수취방식 또한 달리 전개 되었는데, 전세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수전 1결에 미 4두, 한전 1결에 대두, 황두 3두의 전곡을 부과하고 세곡을 모두 호조에 상납토록 하였지만 제주지역은 1결당 2두를 수납하고 그 곡물은 제주 원회곡(元會穀)으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특별 배려는 제주지역의 자연조건에 기인한 것이다.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181쪽.

4) 정형우, 「대동법에 대한 일연구」 『사학연구』 2호(한국사학회, 1958).
다가와고조(田川孝三), 『이조공납제의 연구』(동양문고, 1965).
황선영, 「조선초기 진상제 연구」(부산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박도식, 「조선초기 국가재정의 정비와 공납제 운용」 『관동사학』 7(관동사학회, 1996).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국학자료원, 1999).
장동표, 『조선후기 지방재정연구』(국학자료원, 1999).
송수환, 『조선전기 왕실재정 연구』(집문당, 2000).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제주 진상과 관련하여 종류와 내용 및 수량, 제주도민의 진상부담 실태, 진상과 수취제도, 봉진절차와 수송에 관한 내용 등의 부분에서 연구되어졌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진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조선후기 제주도에서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세제(稅制) 가운데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던 진상의 실상과 이에 따른 제주민의 생활 양상을 규명하는데 있다. 특히 제주지역 진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우마와 감귤, 해산물과 약재에 관한 사료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제주도 진상에 관한 연구를 재검토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조선시대 진상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이와 함께 조선후기 제주도 진상내역을 검토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 공마진상의 실태와 조선후기 공마진상으로 인한 제주민들의 생활상을 파악하였다.

IV장에서는 감귤봉진에 대하여 조선후기 감귤봉진의 종류와 수량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감귤진상에 의한 제주민의 부담을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해산물 진상의 품목별 변화와 제주에서 바쳤던 약재의 종류와 특징, 약재진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조선후기 제주사회를 이해하고 나아가 제주도민의 경제사와 생활사의 측면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장의 진상의 관련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진상 변화 파악은 『탐라지』, 『남환박물』, 『탐라지초본』,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사례』, 『탐영사례』 등의 사료분석을 토대로 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온라인판⁵⁾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5)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 <http://sillok.history.go.kr>, (2007년 12월 5일) 참조.

II. 진상의 의미와 제주 진상의 종류

1. 진상의 의미

조선시대 제주진상에 대해 고찰함에 있어 먼저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백성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세, 공물, 진상, 잡세 등의 세목이 있었다. 이를 총칭하여 공부(貢賦)라 하기도 하는데 위에서 거두는 것을 부(賦)라 하고 아래서 바치는 것을 공(貢)이라 한다. 원래 공부는 세목이 아니었으나 태종 8년(1408) 제주지역의 공부를 말(馬)을 상납하는 것으로 삼아 호세(戶稅)의 일종으로 제정되었고 이 공부가 곧 세공마였다.⁶⁾

이러한 진상 제도에 대한 시초는 고려조에 국왕에 대한 공상을 『고려사』와 『증보문헌비고』에 진헌(進獻) 또는 상공(上供)이라는 기록⁷⁾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려조 이래 진상이 제도화되어 있었으며 진헌과 상공이라는 말로 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또한 조선건국 후 태조 4년(1395)의 기록으로⁹⁾보아 조선조에서는 이미 진상이란 말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다시 진헌이란 말도 쓰여지고 있으며 또 상공이란 말도 진상의 뜻으로 사용된 예가 많았다.

이와 같이 진상은 고려조 이래로 행해졌던 것으로 조선왕조 때에 정비하여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이며, 공물이 주로 중앙관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과징하는 생산물 지대인 반면에 진상은 원래 공물과는 달리 외관직의 국왕에 대한 예헌으로 관념되어 생성된 것이다. 그래서 진상은 주로 각

6) 『태종실록』 권 16, 태종 8년 9월 12일 정사조.

7) 『고려사』 권 85, 지권 39, 형법 2, 「八年 三月 制曰…凡供御物膳 各因土宜 隨即進獻 其餘玩好·熊·虎·豹皮 無以勞民 徵取密進 又無以驛路 贈送私門」.
『증보문헌비고』 전부고 10, 공제 1년, 「監察司言 諸道按廉使·別監 憑籍上供 斂民紬·紵·皮·紙·脯果 等物賂遺權貴 請皆理罪」.

8) 이외에도 고려때에 선(膳)·상선(常膳)·삭선(朔膳)·별선(別膳) 등의 용례로 보아 진상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일조각, 1980), 265~271쪽.

9) 『태조실록』 권 8, 태조 4년 10월 25일, 「進上鷹子外私贈鷹子」.

도 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를 위시한 지방장관이 국왕에 대한 봉상의 예물로 월내 각사에 상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진상은 전세나 공물과 같이 의무적인 공과(公課)의 하나로서 민호에 부과될 뿐 아니라 국왕과 종묘에 바치는 예물이라 하여 그 과정이 엄격하였다. 또한 진상의 종류와 그 규모도 시대의 추이에 따라 확대되어 갔다.

조선시대 진상은 본래 공납의 하나로 크게 물선진상·방물진상·제향진상·약재진상·응자진상으로 나누어지며 이외에도 불시에 수취하는 별례진상이 있다.¹⁰⁾

물선진상은 외관이 왕실에 대하여 식품을 대납하는 것을 말한다. 물선진상은 다음 기록과 같이 월선과 별선으로 구분되어 대납하였다.

가) 각도(各道)에서 별선(別膳)을 바치는 것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¹¹⁾

나) 각도(各道) 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에게 명하여 월선(月膳)을 바치지 말게 하였다.¹²⁾

위 상술한 사료 가)에 나타나는 별선이란 지방관이 수의(隨意)로 바치는 것으로 주로 계절에 따른 시물로서 별미를 가리키는 것이며 사료 나)의 월선은 각도의 토의(土宜)에 따른 산물로서 어류와 육류를 비롯한 잡다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달마다 봉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러 도의 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등이 월 1회 또는 2회 정기적으로 바치는 것으로 삭망(朔望)진상과 현지에 부임할 때 바치는 도계(到界)진상, 지방관이 임기를 마치거나 또는 임기내에 교체되어 돌아갈 때 상은의 뜻으로 예물을 바치는 과체(瓜遞)진상도 물선진상에 속한다.¹³⁾ 도계(到界)는 지방 수령으로 부임한 자가 부임 보고와 그 제임(除任)의 사은을 겸하여 예장(禮狀)을 올릴 때 상은 예물로 바치는 것이며 과체(瓜遞)는 제임(遞任) 즉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될 때에 사은의 뜻으로 토산물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물선진상은 식품이 주

10) 송수환, 『조선전기 왕실제정 연구』(집문당, 2000), 218쪽.

11) 『태종실록』 권 27, 태종 14년 6월 7일, 「停各道進別膳」.

12) 『태종실록』 권 28, 태종 14년 9월 14일, 「各道水軍都節制使勿進月膳」.

13) 이외에도 물선진상에 일차물선(一次物膳)도 있었는데 이는 진상품이 어물과 육류의 생물(生物)로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경도와 가까운 경기도에 집중 부과하였던 것으로 경기도에서만 행하였던 것이다. 송수환, 『조선전기 왕실제정 연구』(집문당, 2000), 221쪽.

품목이어서 빈도 또한 잦았다.¹⁴⁾

방물진상은 정조(正朝), 동지(冬至) 및 국왕의 탄일(誕日)을 뜻하는 삼명일과 왕비의 탄일, 입춘, 단오, 추석 등의 명절일에 행해지는 명일(名日) 방물이 주된 것이다.

특히 삼명일은 조선조의 최대의 명일로 외관은 이 삼명일에 맞추어 방물을 진상하였다. 정조(正朝)에는 궐에 들어가 가례(嘉禮)의 잔을 올리고 방물을 바쳤다.

삼명일은 명절일에 행해지는 토산물이 주된 것으로 대체로 병기를 진상하고 다음으로 말과 호피, 녹피 등이 진상되었다. 이외에 행행(行幸)·강무(講武)때 인근 지방관이 방물을 진상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방물진상에 속한다.¹⁵⁾

제향진상은 천신(薦新)을 가리키며 천신은 종묘(宗廟)와 원묘(原廟)인 문소전, 별묘(別廟)인 계성전, 영녕전, 위덕전, 연은전의 제사 등 각종 제사에 쓰는 제수물을 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농서(典農寺), 내자시(內資寺), 전생서(典牲署), 사포서(司圃署), 장원서(掌苑署) 등의 관련 제사(諸司)가 마련할 수 없는 것을 각 고을에 나누어 배정한 것으로 월별 천신물은 태종 12년(1412)에 정한 월령에 따랐다.¹⁶⁾

물종은 주로 해산물, 과실, 곡물, 가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계절에 따라 가장 먼저 나오는 신곡, 과실, 어물 등을 봉진하도록 월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선건국의 주체세력이 성리학을 신봉하는 고려말의 신진사대부 계층인 만큼 건국과 더불어 제향의 의제가 서둘러 개혁되었다. 언제이고 간에 시물(時物)이나 전렵(畋獵)의 소획물이 천신되었고 사시(四時)에 제향이 베풀어졌다. 제향진상은 국초부터 외관이 종묘사직을 받드는데 참여한다는 관념에서 엄정한 제도로서 존재하였다.

14) 왕실에는 상공을 위한 토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사도시(司導寺), 내담시(內膽寺), 사재감(司宰監), 의영고(義盈庫), 내자시(內資寺), 사포서(司圃署)를 공상육사(供上六司)라 하여 전담기구가 있었으나 어류, 육류 등의 어선은 절대적으로 진상에 의존하였다. 황선영, 「조선초기 진상제 연구」(부산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9~12쪽.

15) 행행(行幸)은 국왕이 사냥이나 온천목욕, 배릉(拜陵) 등을 위하여 궁궐 밖으로 거동하는 일을 말하며 강무(講武)는 군사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한기에 국왕이 친림하여 수렵을 행하면서 군사를 훈련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길게 20여일이 소요되었고 온천목욕의 경우는 약 50여일간이나 행하였다. 송수환, 『조선전기 왕실재정 연구』(집문당, 2000), 210쪽.

16) 『태종실록』 권 24, 태종 12년 8월 8일, 「命以時物薦宗廟 二月水, 三月蕨, 四月松魚, 五月麥, 筍, 櫻桃, 瓜, 杏, 六月林檎, 茄, 東瓜, 七月黍, 稷, 粟, 八月年魚, 稻, 栗, 九月雁, 棗, 梨, 十月柑橘, 十一月天鵝, 十二月魚, 兔」.

약재진상은 지방 각 관에서 왕실의료업무를 전담하는 내의원(內醫院)에 약재를 진상하는 것으로 관찰사의 책임아래 마련되었다.¹⁷⁾

옹자진상은 각 지방관에서 매를 사육 또는 생포하여 이를 진상하는 것을 말한다. 매사냥은 실용적 측면도 있으나 주로 유희로 고려조 이래 국왕과 귀족들의 상류사회에서 널리 행해졌다. 이후 조선왕조에도 고려 제도를 모방하여 왕실 직속기관으로서 응방(鷹坊)¹⁸⁾을 설치하였다. 응방은 국왕과 귀족들의 사냥과 종묘 친신의 공상, 왕실과 귀족들에 대한 찬수(饌需)의 제공, 그리고 명조(明朝)에 대한 옹자진헌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매는 주로 북부지방에서만 포획되는 것이고 포획기술 또한 중요하였다. 이러한 일종의 조선상류사회의 야외놀이였던 매사냥이 중국에 대한 진헌과 더불어 큰 변혁을 겪게 되면서 옹자의 포획이 한동안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되어 전담기구가 생기고 불산지(不產地)로 간주되었던 남해에까지 매 진상이 부과되는 등 진상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성종조에 이르러 진헌의 폐지¹⁹⁾와 더불어 소멸되었다.

별례진상은 국왕의 하명에 의한 것과 지방관의 임의에 의한 것 두 가지가 있었다. 즉 상공 또는 국용에 필요한 물품을 임시지정하여 왕명으로 진상케 하는 것과 지방관이 희귀물품을 입수하였을때 국왕에게 바치는 경우이다.²⁰⁾

이 외에 금·은 등 귀금속을 채굴하여 바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금·은 채굴은 주로 채방사(採訪使)가 각산지로 파견되어 주관하였고 캐는 대로 상납케 하였다.

이와 같이 별례진상은 국가의 긴급제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혹은 희귀물품의 예헌(禮獻)이라는 뜻으로 수시로 행해진 진상을 말한다.

이러한 진상물은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안(貢案)에 수록되어 공물에 비해 봉상예물로서 훨씬 더 중요시되었다. 세종 원년(1419) 12월에 진상물의 물목과 도수가 법제화됨으로써 수의성(隨意性)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이 크게 시정되었다.

17) 김옥근, 『조선왕조 재정사 연구 I-지세편-』(일조각, 1984), 18~19쪽.

18) 왕조 초기부터 응방이 있었는데 조류를 진상했던 곳을 말한다. 여기에 소속된 자를 응인(鷹人)이라 하였고, 매의 사육과 순치(馴致), 매사냥에 종사케 하며 국왕의 수렵 및 강무에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옹사는 매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였기에 세습적 가업으로 전승하였고 전세와 요역 이외의 잡역이 면제되었다. 응인은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 각 관에도 두어 매를 사육 혹은 생포하여 이를 진상으로 바쳤다. 김옥근, 『조선왕조 재정사 연구 I-지세편-』(위의 책), 19~20쪽.

19) 『성종실록』 권 6, 성종 1년 7월 26일, 「今鷹坊所畜亦多, 姑勿進鷹」.

20) 지방관이 바치는 경우를 수시별진(隨時別進) 또는 비시진상(非時進上)이라 하였다. 황선영, 「조선초기 진상제 연구」(부산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6쪽.

진상은 매월 한 차례 하게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물목이 아니면 보름을 전후해서 진상하고 과일이나 채소 등은 새로 나면 즉시 바쳤으며 날 짐승도 특별한 것은 수시로 바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진상은 지방관이 국왕이나 왕실에 대한 예의란 취지에 따라 관에서 마련하는 것이 원칙으로 민호의 직접적인 부담이 아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민호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진상 중에 제주도에 부과되었던 것은 물선진상·방물진상·제향진상·약재진상 등이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국가에 헌납하는 진상품과 그 외에 목사의 도입과 체임, 관관과 각 현감의 체임때에도 진상하였다.

2. 제주지역 진상의 종류와 특징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주의 공부(貢賦)를 정한 것은 태종 8년 9월부터였다. 이에 관해서는 『태종실록』 태종 8년(1408) 기록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제주(濟州)가 바다를 격(隔)해 있어 민호(民戶)의 공부(貢賦)를 지금까지 정하지 못하였으니, 대호(大戶)·중호(中戶)·소호(小戶)를 분간(分揀)하여 그 토산(土產)인 마필(馬匹)로 하되, 대호(大戶)는 대마(大馬) 한 필(匹), 중호(中戶)는 중마(中馬) 한 필(匹), 소호(小戶)는 5호(戶)가 아울러 중마(中馬) 한 필(匹)을 내게 하여, 암수[雌雄]를 물론하고 탈 만한 마필을 가려서 공부(貢賦)하게 하고, 기축년 봄부터 모두 육지에 내보내게 하소서.²¹⁾

이 사료를 통해 제주는 바다로 막혀 민호의 공부(貢賦)를 정하지 못하였다가 태종 8년(1408)에 이르러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의 민호는 말을 상납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고 있다. 즉 대호·중호·소호로 나누어 그 토산인 마필로 하되 대호는 대마 1필, 중호는 중마 1필, 소호는 5호가 합하여 중마 1필로 규정하였다.

21) 『태종실록』 권 16, 태종 8년 9월 12일, 「初定濟州貢賦. 濟州隔海, 民戶貢賦, 至今未定. 乞大中小戶分揀, 以其土產馬匹, 大戶大馬一匹, 中戶中馬一匹, 小戶五并中馬一匹. 勿論雌雄, 擇其可騎馬匹爲賦, 自己丑年春節, 並令出陸」.

그 품목을 말(馬)로 정한 것은 당시 공물분정에 있어서 『태조실록』에 “토지의 생산을 헤아려 공부를 정한다”²²⁾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지방의 특산물과 산출의 다소에 따라 공물을 분정 한 것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진상은 조선 초기 세종 3년(1421)이전까지는 진상의 품목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감귤류 다섯가지, 약재류 두가지, 전복류 네가지, 오징어 등이었다.²³⁾

그러나 세종대 이후 진상품목이 확정되어 가면서 조선후기 제주도의 진상물은 제도상 체계적으로 봉진되었고 진상 품목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종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주 안무사에게 매[鷹]를 진상하지 말도록 명하였다.²⁴⁾

제주사람 임자번(林子蕃)이 자주(紫珠)를 바치니, 면포(綿布) 20필을 내려 주었다.²⁵⁾

나) 진상하는 모마粧(毛馬粧)은 모두 전피(腆皮)로 장식하기 때문에 이를 갖추기 어려운 폐단이 있으니, 앞으로는 전피를 취하지 말고 마·우피(馬牛皮)·구피(狗皮) 등 얻는 대로 장식하여 진상하라 하였다.²⁶⁾

다) 제주 안무사 최해산(崔海山)이 한 꼭지에 6개가 달린 석류를 올렸다.²⁷⁾

제주 안무사 최음산(崔淫山)이 원숭이[獼子]와 노루[獐] 한 쌍을 바쳤다.²⁸⁾

위 상술한 가)의 기록을 통해 제주 안무사가 매를 진상하였던 것과, 제주에서 진주를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료 나)에서는 말가죽, 소가죽, 개의 가죽까지 진상하게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제주 안무사가 사사로이

22) 『태조실록』 권 2, 태조 1년 10월 12일, 「量地之産而定其貢, 量物之入而節其用, 此經常之法也」,

23) 『세종실록』 권 11, 세종 3년 정월 13일, 「濟州之柑子, 柚子, 洞庭橘, 乳柑, 青橘, 菓蒿, 榲子, 早藿, 圓鮑, 引鮑, 條鮑, 搥鮑, 烏賊魚等物, 亦將趁節供進. 命除濟州進上」.

24) 『세종실록』 권 29, 세종 7년 8월 12일, 「命濟州按撫使, 毋進鷹」.

25) 『세종실록』 권 39, 세종 10년 1월 24일, 「濟州人林子蕃, 獻紫珠, 賜絳布二十四」.

26) 『세종실록』 권 63, 세종 16년 3월 26일, 「濟州進上毛馬粧, 皆粧以(腆)〔獮〕皮, 故難備有弊. 今後勿論獮皮, 馬牛皮, 狗皮, 隨宜粧飾以進」.

27) 『세종실록』 권 69, 세종 17년 9월 21일, 「濟州按撫使崔海山, 進石榴六顆」.

28) 『세종실록』 권 73, 세종 18년 윤6월 16일, 「濟州按撫使崔淫山 崔海山 進獼子獐牝牡, 命養于上林園」.

진상한 사례로 석류, 원숭이, 노루를 바쳤음을 알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세종때의 기록으로만 보아도 다양한 물목이 바쳐졌음을 알 수 있으며 세종 3년(1421)에 다섯가지의 감골류, 두가지의 약재류, 네가지의 전복류, 그리고 오징어를 진상하였는데 비해 몇 해 안 지나 여러 물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해 확정된 각 도의 토공(土貢)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 세 곳의 토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목 - 대모(玳瑁)·표고·우무(牛毛)·비자·감골·유자·유감(乳柑)·동정굴(洞庭橘)·금골(金橘)·청골(靑橘)·산골(山橘)·전복·인포(引鮑)·퇴포(槌鮑)·조포(條鮑)·오징어·옥두어(玉頭魚)·곤포(昆布)·돌유자나무(山柚子木)·이년목(二年木)·비자나무(榲子木)·좋은말(良馬)이요, 약재는 진피(陳皮)·마뿌리(山藥)·석골풀[石]·초골풀[草]·소태나무열매[川練子]·구리대뿌리[白芷]·팔각(八角)·영릉향(零陵香)·오배자(五倍子)·치자·향부자(香附子)·모과·뫓미나리(柴胡)·푸른굴껍질(靑皮)·백변두(白扁頭)·바곳[草烏頭]·엄나무껍질[海東皮]·후박(厚朴)·오징어뼈·두충(杜沖)·순비기나무열매[蔓荊子]·석결명(石決明)·끼무릇뿌리[半夏]·누른국화[黃菊]·녹용·박상(舶上)·회향(茴香)·탱자껍데기[枳殼]다.²⁹⁾

정의현 - 대모(玳瑁)·표고·우무(牛毛)·미역·다시마·감골·청골(靑橘)·비자·퇴포(槌鮑)·조포(條鮑)·오징어·옥두어(玉頭魚)·전복이요, 약재는 목은 굴껍질(陳皮)·마뿌리[山藥]·석골풀[石斛]·구리대뿌리[白芷]·영릉향(零陵香)·향부자(香附子)·탱자껍데기[枳殼]·푸른굴껍데기[靑皮]·엄나무껍질[海東皮]·후박(厚朴)·두충(杜沖)·치자(榲子)·끼무릇뿌리[半夏]·녹용이다.³⁰⁾

대정현 - 전복·표고·우무·미역·다시마·비자·감골·유감(乳柑)·동정굴(洞庭橘)·청골(靑橘)이요, 약재가 후박(厚朴)·탱자[枳實]·석골풀[石]·팔각(八角)·두충(杜沖)·끼무릇뿌리[半夏]·치자(榲子)·향부자(香附子)·푸른굴껍질[靑皮]·목은굴껍질[陳皮]·엄나무껍질[海東皮]·영릉향(零陵香)이다.³¹⁾

29) 『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전라도/제주목, 「山稻, 黍, 稷, 菽, 蕎麥, 麩麥. 土貢, 玳瑁, 菓膏, 牛毛, 榲子, 柑子, 柚子, 乳柑, 洞庭橘, 金橘, 靑橘, 山橘, 全鮑, 引鮑, 槌鮑, 條鮑, 烏賊魚, 玉頭魚, 昆布, 山柚子木, 二年木, 榲子木, 良馬. 藥材, 陳皮, 山藥, 石藟, 草藟, 川練子, 白芷, 八角, 零陵香, 五倍子, 榲子, 香附子, 木瓜, 柴胡, 靑皮, 白扁豆, 草烏頭, 海東皮, 厚朴, 烏魚骨, 杜沖, 蔓荊子, 石決明, 半夏, 黃菊, 鹿茸, 舶上, 茴香, 枳殼.」

30) 『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전라도/제주목/정의현, 「土貢, 山稻, 黍, 粟, 菽, 小豆, 蕎麥, 麩麥. 土貢, 玳瑁, 菓膏, 牛毛, 藿, 昆布, 柑橘, 靑橘, 榲子, 槌鮑, 條鮑, 烏賊魚, 玉頭魚, 全鮑. 藥材, 陳皮, 山藥, 石斛, 白芷, 零陵香, 香附子, 枳實, 靑皮, 海東皮, 厚朴, 杜沖, 榲子, 半夏, 鹿茸.」

위의 기록은 당시 봉진하였던 물목으로 제주지역 진상 품목이 다양화·세분화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위 물목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우마와 감귤, 해산물과 약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의 지형이 완만하고 따뜻한 기온으로 동·식물과 해산물 서식이 다른 지방에 비해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려조 이래로 행하여져 조선조 말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진상제도는 조선왕조의 재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³²⁾

이에 조정에서의 관심은 대단하였다. 조선후기 제주의 진상에 대한 기록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에 제주에서 바쳤던 진상물목 가운데 말, 감귤, 해산물과 약재의 진상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7세기~18세기 초 제주에서 진상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주에서 보낸 말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진상마 60필, 흥구마 40필을 보냈으나 배 안에서 말 1필을 더하여 모두 109필이 도착하였다.³³⁾

나) 제주도에서 세공마(歲貢馬) 2백필을 진상하였다.³⁴⁾

다) 제주에서 연례마 8필, 삼명일진상마 60필, 흥구마·노태마 각 2필, 합 93필 보냈으나 1필은 영주에서 고실되고 2필은 충도에서 병이나 실제로 90필을 상납하였다.³⁵⁾

31) 『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전라도/제주목/대정현, 「土宜, 山稻, 粟, 稷, 小豆, 蕎麥, 麩麥. 土貢, 全鮑, 蕪膏, 牛毛, 薑, 昆布, 樵子, 柑橘, 乳柑, 洞庭橘, 青橘. 藥材, 厚朴, 枳實, 石斛, 八角, 杜沖, 半夏, 梔子, 香附子, 青皮, 陳皮, 海東皮, 零陵香」.

32) 다가와고조(田川孝三), 『이조공납제의 연구』(동양문고 1965).

33)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7월 21일, 「濟州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四, 甸咎馬四十四, 及上年歲貢馬, 船中故失代徵馬一匹, 共一百九匹先到」.

34) 『승정원일기』 현종 5년 7월 15일, 「濟州進歲貢馬二百匹」.

35) 『승정원일기』 숙종 3년 7월 13일, 「濟州先運年例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四, 凶咎驚駘, 竝二十五匹, 合九十三匹內, 到綾州故失, 一匹, 中路病留, 二匹, 實上納九十四匹外, 又有上年山屯馬, 船中故失, 代生徵馬二匹, 牧使別進上馬十四, 一時來到」.

라) 예조에서 제주에서 조정에 천신할 유감 200개, 동정귤252개를 보내왔으므로 진상한 감귤은 이송할 필요 없다고 사용원에 분부할 것을 청하였다.³⁶⁾

마) 제주에서 3월초 추복 심수를 바쳤다. 대전에 40첩 진상 중 20첩이 줄어들었다... 해당 목사를 추고함이 어떤지 물으니, 윤택하였다.³⁷⁾

위 사료 가)의 내용으로 보아 제주에서 바치는 말은 연례진상마, 삼명일진상마, 흥구마 등으로 나누어 바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료 나)를 통해 세종마는 해마다 200필을 진상하였고, 사료 라)에서는 감귤진상 중 천신으로 유감과 동정귤을 바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료 다)에서는 비록 제주에서 물목의 수량을 채워서 봉진하더라도 진상물 수송과정에서 고실되거나 병이 들어 진상물목의 수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와 사료 마)와 같이 제주목사의 불찰로 수량 개수의 부족함으로 추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조선후기 제주에서는 대체로 말과 감귤, 해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감귤 진상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하나인 황감제(黃柑製)³⁸⁾라는 제도를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숙종 때 자주 거론되는데 이것으로 보아 감귤봉진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겠다. 황감제는 해마다 제주에서 바친 감귤이 10월~2월 사이에 서울에 도착하면 임금이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에게 귤을 승지(承旨)·성균관 당상관과 함께 시험관이 되어 반궁(泮宮:성균관)에서 관학 유생들에게 감귤을 나누어 주고 시험을 치른 다음 시험지를 거두고 입궐하여 과시(科試)의 차등을 정하는데, 시험 과목과 정원은 절일제(節日製)³⁹⁾와 같이 실시하였고,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자에게는 사제(賜第)⁴⁰⁾를

36)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12월 3일, 「禮曹啓曰, 今日朝因司饗院啓辭, 濟州乳柑·洞庭橘, 進上來到, 而宗廟薦新所載船, 相失於海中, 進上元數內, 乳柑二百箇, 洞庭橘二百五十二箇, 移送禮曹, 宗廟·永昭殿·敬寧殿薦新後, 還爲內入事, 允下矣. 卽者薦新乳柑·洞庭橘, 迫到奉常寺, 纔已看品, 來初六日當爲薦進, 進上柑橘, 則不必移送, 以此分付該院, 何如 傳曰, 允. 以上禮曹騰錄」.

37)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4월 21일, 「濟州三月朔別進上搥鯪開閣汁數, 則大殿進上四十貼內二十貼欠縮, 莫重御供...當該牧使推考 何如 傳曰, 允」.

38) 『숙종실록』 권 6, 숙종 3년 2월 11일, 「賜柑試製居首幼學李寅賓直赴殿試, 餘皆給分」.

『숙종실록』 권 21, 숙종 15년 9월 9일, 「成均館九日課製, 趙祺錫居首. 命賜及第」.

『숙종실록』 권 56, 숙종 41년 11월 28일, 「是日, 退行柑製」.

『숙종실록』 권 33, 숙종 25년 1월 3일, 「頒柑試士于泮宮, 賜居首儒生李濟直赴殿試」.

39) 1월 7일(人日), 3월 3일(上巳), 7월 7일(七夕), 9월 9일(重陽)에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訟)·제(制)·조(詔)·논(論)·부(賦)·명(銘) 중 한 편을 선택하여 제출케 했으며,

내렸다. 이를 황감제 혹은 감제(柑製)·황감과(黃柑科)라 하며 제주에서 꺾을 바칠 때 이를 치하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위의 기록으로는 체계적으로 바쳤던 진상의 내역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17세기 제주의 진상 내역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이원진 『탐라지』공헌조를 통해 당시 제주 진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⁴¹⁾

< 표 1 > 17세기 제주 진상 내역

| 구 분 | 내 역 |
|--------|--|
| 영 진상도계 | 백랍 24편 |
| 월 령 | 2월 추복 265첩, 조복 265첩, 인복 95속, 청굴 1,250개 3월 추복 240첩, 인복 85속, 미역 40뭇, 미역귀 2석 5두 4, 5월 추복 각 760첩, 인복 각 170속, 표고버섯 각 2석 1두 5승 6월 추복 1,108첩, 오징어 215첩, 인복 170속 7월 추복 680첩, 오징어 430첩, 인복 170속 8월 추복 1,108, 인복 170속, 오징어 258첩, 비자 14승, 반하 31근, 석결명 2근, 엄나무껍질 6근 9월 추복 425첩, 오징어 172첩, 인복 85속, 유자 1,850개, 유안식향 33근 |
| 산 물 | 초운 금굴 880개, 감자 1,550개 2운~7운 감자 각 3,450개, 금굴 각 300개 8운 유감 1,400개, 동정굴 980개, 감자 1,290개 9운~18운 감자 각 3,300개, 유감 각 300개, 동정굴 각 340개 19, 20운 감자·유감·동정굴 수량은 18운과 같다. 산굴 760개, 당유자는 결실수에 따라 봉진 |
| 세 초 | 백랍 24편, 새 표고버섯 1석 2승, 궤자의 장포·원포 각 32조, 노루가죽 11령, 치자 160근, 이른 미역 132첩, 진피 48근, 청피 30근, 굴씨 7냥, 굴잎 6근, 기각 22근, 향부자 78근, 무환자 8냥, 석곡 11냥, 기실 6근, 연근 1근 4냥, 연실 4냥, 후박 32근, 목환자 4,400(5년에 한번 봉진한다) |
| 체 입 | 목사·관관은 각 3필, 현감은 각 2필, 마장 10부, 중·소록피 52령, 백랍 42편, 녹장포·쾌포 각 64조, 사슴꼬리 62개, 사슴혀 64개, 무회목 26주 |
| 삼 명 일 | 탄일·동지·정조에 각 20필, 마장 11벌, 결궁장피 60령 |

합격자의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창석, 「감굴진상과 황감제」 『월간관광제주』(월간관광제주사, 1990), 123~127쪽.

40)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41) 이원진 『탐라지』(1653) 공헌조(貢獻條)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 | |
|-------|---|
| 연 레 마 | 8필 |
| 세 공 마 | 100필 (식년에는 어승마 20필, 차비마 80필, 흥구마 100필 진상) |

※ 추복(搗鰯)은 두드러가면서 말린 전복을 말하며, 조복(條鰯)은 가늘고 길게 썰어 말린 전복, 인복(引鰯)은 납작하게 펴서 말린 전복으로 건복(乾鰯)이라고도 한다. 첩은 접의 한자 차용 표기이며 접복 100개를 한 단위로 이르는 말이다.

< 표 1 >의 내용으로 보아 17세기 제주의 진상은 많은 종류와 수량을 바쳤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진상의 종류를 살펴보면 진상도계는 도계진상이라고 하며 새로 지방수령으로 부임할 경우 그 지방의 아전이나 토반들이 물건을 마련하여 바치던 진상으로 백랍 24편을 진상하였다. 또한 전복과 오징어를 포함한 해산물 종류가 매달 월령으로 바치고 있다. 조선후기 월령 물목이 정례화되어 다달이 정해진 예에 의해 진상되었고, 제주도에서는 2월부터 9월까지 계속 진상되었다.

월령으로 바쳐진 수량은 추복 5,346접, 조복 265접, 인복 1,115속, 오징어 1,075접으로 총 7,373접을 바쳤다. 이외 미역귀와 표고버섯, 반하, 석결명 등도 바쳤음을 알 수 있다.

산물은 굴유를 이르는 것이다. 감귤진상은 물선진상과 제향진상이 있는데, 물선은 왕실에 공용되는 음식의 재료로 조선초기에는 특별한 제도 없이 각 지방관이 왕실에 대한 봉상의 예물로 각 품목의 생산에 따라 진헌되었다.

제향진상은 천신으로 종묘(宗廟)·원묘(原廟)·별묘(別廟) 등에 대한 제사의 공물을 말한다. 천신은 그 달에 생산되는 물건으로 시물(時物)이라고 한다. 시절(時節)제사에 시절의 신미(新味)를 천헌(薦獻)하는 것을 뜻한다.

즉 감귤은 제주의 특산으로서 산물(酸物)이라고 총칭하였고, 천신도 공물 및 물선진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산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그 봉진의 시기는 생산되는 계절에 따라 정하였고 제주의 감귤은 다른 것과 달리 20운(運)으로 나누어 봉진케 하였다. 17세기 20운에 걸쳐 봉진하였던 감귤은 감자 63,140개, 유자 1,850개, 금귤 2,680개, 유감 5,000개, 동정귤 5,060개, 청귤 1,250개, 산귤 760개로 총 79,740개가 진상되었다.

세초는 해마다 12월에 공헌하는 물품으로 주로 약재류가 봉진되었다. 백랍이 90편, 신표고 1두 2승, 치자 160근, 진피 48근, 청피 30근, 향부자 78근, 굴핵 7냥, 무환자 8냥, 석곡 11냥, 기실 6근, 후박 32근 등 여러 종류의 약재류가 봉진되었다. 또한 체임시 바쳤던 말이 총 10필, 마장 10부, 사슴가죽 52령, 사슴꼬리 62,

사슴 혀 64개 등을 바쳤으며, 삼명일말은 60필, 연레마는 8필, 세공마는 100필 등을 바쳤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제주에서 바쳤던 진상품 종류와 액수는 다양하며 많았다. 특히 말과 감귤, 해산물과 약재류의 종류와 액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중반~19세기에도 제주에서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주에서 세공진상마를 바쳤다. 원래 숫자는 396필이었으나 5필은 배 안에서 병으로 5필은 고실되고, 52필은 도중에 병이 나고 11필은 도망갔으며 9필은 고실되었다 ... 실제 308필을 바쳤다.⁴²⁾

나) 제주(濟州)의 백성 40인(人)이 산릉(山陵)의 역사에 나아가기를 자원(自願)하여 올라왔으므로, 임금이 명정전(銘政殿)에 나아가 소견하고 위유(慰諭)하였다. 그 중에 표고(菓古)를 바치는 자가 있었다.⁴³⁾

다) 제주에서 감귤(柑橘)을 진공(進貢)하였다.⁴⁴⁾ 반궁(泮宮)에서 감제(柑製)를 설행하여 수석을 차지한 이광문(李光文)을 직부 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⁴⁵⁾

위 상기한 세 가지의 사료에서는 제주에서 진상으로 바쳤던 말과 감귤, 표고를 약재로 진상하였던 약재진상에 관한 내용이다. 위 사료 가)에서는 17세기와 비슷한 말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실과 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제주에서 출발한 마필의 수가 약 90필정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였으며 진상물 운송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제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요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위 사료 나)에서는 제주 사람이 임금께 표고를 바치는

42) 『승정원일기』 경종 3년 7월 22일, 「濟州歲貢進上先後運馬, 一時來到。元數三百九十六匹內, 五匹船中病留, 五匹故失, 五十二匹到中路病留, 十一匹逃逸, 九匹故失, 二匹爲虎咬斃, 三匹到本寺病留, 一匹故失, 合八十八匹計除, 實納馬三百八匹。」

43) 『영조실록』 권 89, 영조 33년 6월 2일, 「濟州民四十人自願赴山陵役上來, 上御明政殿, 召見慰諭之。有獻菓古者。」

44) 『영조실록』 권 90, 영조 33년 10월 22일, 「濟州貢柑。」

45) 『순조실록』 권 9, 순조 6년 11월 18일, 「設柑製于泮宮, 居首李光文, 直赴殿試。」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사료 다)에서는 감귤을 진상하는 내용과 더불어 황감제의 시행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으로는 18·19세기 제주의 진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18세기 초 당시 제주 진상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 비교적 잘 드러나 있는 이형상의 『남환박물』을 통해 17세기 제주 진상의 내역과 비교·고찰해 보고자 한다. 18세기 초의 진상의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남환박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내에 공마 4~500필, 각종 전복 9,000여첩, 오징어 700여첩, 산과(酸果) 38,000여개, 말안장 4~50부, 사슴가죽 5~60명, 노루가죽 50명, 사슴혀 5~60개, 사슴꼬리 5~60개, 말린 사슴고기 200여조, 각종 약재 470여근, 말에 입히는 여러 기구들 680여부, 그 외 표고, 비자, 산유자, 이년목, 활집, 통개, 나전, 포갑 총결, 양태, 모자, 빗 삼장과 같은 작디 작은 잡물들이 모두 공헌에 관계됩니다.⁴⁶⁾

위 내용으로 보아 18세기 초반 제주에서 진상했던 주요 물목과 수량을 알 수 있다. 17세기와 마찬가지로 주된 종류가 말과 해산물, 과실, 약재, 사슴 등이 진상되었다. 위 사료를 통해 < 표 1 >에서 살펴본 17세기 탐라지에 나타난 수량과 비교할 수 있는데, 17세기 말 진상이 178필을 바친 반면 18세기에는 4~500여필로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산물의 경우 17세기 7,373첩을 바쳤으나 18세기에는 2,000여첩이 증가한 9,700여첩을 진상하였다. 과실류에 있어서는 17세기 79,740개가 38,000여개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으며, 약재의 경우는 17세기 465근, 18세기 470여근으로 비슷한 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18세기 초까지 제주 진상의 수량은 약재를 제외하고 많은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말~19세기 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 표 2 >와 < 표 3 >과 같다.

< 표 2 > 18세기 말 제주 진상 내역

46) 이형상, 『남환박물』 지공조(誌貢條).

| 구 분 | 내 역 |
|-------|---|
| 삼명일진상 | 방물 결궁 장피 각 25령 |
| 1 월 | 무 |
| 2 월 | 천신청굴 270, 각전(各殿)청굴 510, 추복 113첩, 조복 113첩, 인복 30주지, |
| 3 월 | 추복 113첩, 인복 27주지 |
| 4 월 | 추복 245첩, 인복 54주지, 표고 12두 |
| 5 월 | 추복 245첩, 인복 54주지 |
| 6 월 | 추복 190첩, 인복 54주지, 오적어 73첩 |
| 7 월 | 추복 189첩, 인복 54주지, 오적어 139첩 |
| 8 월 | 추복 189첩, 인복 54주지, 오적어 88첩, 비자 12두 |
| 9 월 | 추복 139첩, 인복 27주지, 오적어 64첩, 안식향 30근, 반하 23근, 해동피 5근, 석결명 1근, 유자 1,710 |
| 10 월 | 천신감자 253개, 당금굴 287개, 각전궁감자 11,210개, 당금굴 1,380 |
| 11 월 | 천신유감 306개, 동정굴 288개, 당유자 84개, 각전궁유감 2,340개, 동정굴 2,550개, 감자 19,790개, 산굴 700개, 대굴, 소굴, 당유자는 소결에 따라 봉진 |
| 12 월 | 표고 4두, 백랍 24편, 목환자 4,000개, 치자 112개, 궤자장피 10령, 진피 55근, 청피 27근, 굴핵 4냥, 향부자 70근, 비실 2근, 무환자 8냥, 석곡 8냥, 지각 20근, 동근 2근 2냥, 지실 5근, 굴열 5근, 동실 2냥, 후박 30근 |
| 진 상 마 | 정조마 20필, 탄일마 20필, 동지마 20필, 세공마 200필, 흥구마 10필, 노태마 10필, 연례마 8필, 차비마 60필(3년마다 봉진), 갑마 200필(3년 마다 봉진), 별어승마 10필(3년마다 봉진), 감목관연례마 2필 (4년마다 봉진), 제향흑우 40수 |
| 목사 도입 | 백랍 24편 |
| 체 임 마 | 백랍 48필, 사슴 혀 64개, 사슴꼬리 64개, 녹장포 64조, 통개 20부, 치자 33근, 중녹피 30령, 소녹피 22령 |

※ 『제주대정정의읍지』진공조(進貢條)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 표 3 > 19세기 초 제주 진상 내역

| 구 분 | 내 역 |
|------|---|
| 도입진상 | 백랍 24편 |
| 1 월 | 무 |
| 2 월 | 천신청굴 360개, 진상 청굴 510개, 추복 107첩, 조복 107첩, 인복 32주지, |
| 3 월 | 추복 107첩, 인복 29주지 |
| 4 월 | 추복 235첩, 인복 58주지, 표고 12두 |
| 5 월 | 추복 235첩, 인복 58주지 |
| 6 월 | 추복 178첩, 인복 57주지, 오적어 69첩 |
| 7 월 | 추복 177첩, 인복 57주지, 오적어 135첩 |
| 8 월 | 추복 176첩, 인복 57주지, 오적어 85첩, 비자 15두, 반하 25근, 석결명 |

| | |
|----------|---|
| | 2근, 해동피 6근 |
| 9 월 | 추복 132첩, 인복 29주지, 오적어 60첩, 유자 1,440개 |
| 10월, 11월 | 천신 당금굴 319개, 진상 당금굴 1,380개, 천신 감자 281개, 진상 감자 28,060개, 천신 동정굴 324개, 진상 동정굴 2,630개, 천신 유감 342개, 진상 유감 2,420개, 산굴 580개 |
| 12 월 | 백랍 24편, 신포고 4두 8근, 치자 116근, 궤자장피 11령, 진피 48근, 청피 30근, 향부자 70근, 굴핵 7냥, 무환자 12냥, 비실 3근, 석곡 11두, 지실 7근, 후박 32근, 목환자 4,400(5년에 한번 봉진) |
| 삼명일진상 | 결궁장피 75령 |
| 체 임 마 | 체임진상마 3필, 백랍 48편, 통개 20부, 치자 33근, 중녹피 30령, 소녹피 25령 |
| 진 상 마 | 연레마 8필, 삼명일마 60필, 세공마 200필, 흥구마 10필, 노태마 10필, 후우 42수, 어승마 20필, 차비마 80필, 산둔감마 200필, 기안(騏鞍)10부, 흥마장 3부, 흥안 6부, 녹피안자 6부, 체공목 20주 |

※ 『탐라사례』공헌조(貢獻條)(순조 24년 추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 표 2 >와 < 표 3 >의 기록에 의하면 18세기말과 19세기 초 제주에서 진상으로 바쳤던 종류는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우마와 감귤, 해산물과 약재진상이 많은 행하여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수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말 진상은 18세기 말에 379필, 19세기 초에는 391필 정도 바치고 있다.

소는 18세기 말 40수를 바쳤으나 19세기에는 이보다 증가한 42수를 바치고 있다. 감귤의 경우 18세기 말에는 약 4만 여개를 19세기 초반에는 3만 8천개를 봉진하였다. 해산물은 18세기 초 9,700여첩을 바친데 비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는 2,000여첩을 조금 넘는 수량만 바쳤다. 약재의 경우에는 18세기 초와 비슷한 470여근 정도가 19세기 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상공은 미납으로 바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현물로 상납하는 형식의 진상은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조선후기 제주도의 진상은 더욱 체계화되어 감에 따라 진상 물목이 다양해졌다. 특히 진상물 중에서도 제주의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우마와 감귤, 해산물과 약재 진상을 대상으로 많은 수량이 봉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우마진상의 실태와 폐해

조선시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주의 공부(貢賦)를 정한 것은 태종 8년 9월부터였다. 이듬해인 태종 9년(1409)부터는 민호의 공부가 실시되었는데⁴⁷⁾ 제주는 말을 상납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고 있다. 품목을 말(馬)로 정한 것은 당시 공물분정에 있어서 그 지방의 특산물과 산출의 다소에 따라 공물을 분정 한 것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특히 제주 말은 우리나라의 목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양마로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였으며 조선시대 중앙에서 제주에 요구한 공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종(物種)이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로 진상으로 바쳐졌던 말과 흑우의 실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우마진상의 실태

목마(牧馬)는 환경을 중요시 하는데 제주도는 지형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기온이 알맞고 식물 또한 풍부하게 자생하고 있어 목축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⁴⁸⁾ 따라서 제주도는 기후가 따뜻하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밀림지대와 산록 서면에 광활한 초원지대와 우마를 헤치는 맹수가 없어 목축이 선사시대부터 행해졌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건마육이 조정에 진상되었으며, 특히 연산군은 말고기가 양기를 돋는 것이라 하여 즐겨 먹었다고 한다.

말의 최적의 생산지는 제주였으며, 세종 때 병조에서 “제주는 본래 좋은 말을 생산하는 땅이어서 다른 목장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기록⁴⁹⁾과 예종 때 행 통례원 인의 고담(行通禮院引儀 高潭)은 “제주는 고기(古記)에 못된 짐승이 없고 산림광야와 수초가 모두 풍족하여 양마를 다량으로 생산 할 수 있다.”⁵⁰⁾고 하였다.

47) 『태종실록』 권 18, 태종 9년 11월 28일, 「各道各官貢賦, 監司守令趁節上納」.

48) 진축삼(陳祝三), 「몽원과 제주말」 『탐라문화』 8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49) 『세종실록』 권 89, 세종 22년 5월 6일, 「濟州, 本產良馬之地, 非他牧場之比也」.

또 성종 때에는 “우리나라 제도(諸道)에 양마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주도의 말이 가장 훌륭하다.”⁵¹⁾라고 하였다. 이처럼 말은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 초 제주의 목장은 고려말의 제도를 답습하는 정도였으나⁵²⁾, 말이 군사상으로도 교역상으로도 중요성을 인정하여 7차례의 개편 과정을 통해 실정에 맞는 마정체계를 갖추어 제주목장의 관리체제는 제주목사 → 감목관 → 마감(馬監) → 군두(群頭) → 군부(群副) → 목자(牧子)로 이어졌으며, 매 소에 마감 1명, 자에 군두 1명, 군부 2명, 목자 4명을 배치하였다.⁵³⁾

한편 조선전기 제주목장에서 생산되었던 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세종실록』의 세종 27년(1445)과 28년(1446)의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다.

가) 제주도 한 섬에서 번식한다고 해야 그 수는 9천 7백 92필에 불과하고, 제도(諸道)의 번식도 비록 많다고 하지만 2만 2천 4백 6필에 불과한데, 매년 민간에 흘리는 것은 천수(千數) 미만이다.⁵⁴⁾

나) 사복시(司僕寺)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본디 놓아먹인 말[元放馬]이 3천 8백 10필이고, 대정(大靜)에 2천 90필이고, 정의(旌義)에 3천 3백 80필었는데, 새끼를 낳은 것이 다만 1천 1백 60필뿐이고, 손실된 것이 1천 9백 90필에 이르게 되었다.⁵⁵⁾

위 상술한 가)의 기록으로 보아 15세기 제주에서 기르던 목마는 약 9,792필임

50) 『예종실록』 권 3, 예종 1년 2월 29일, 「濟州古稱房屋所臨, 又無惡獸, 實育馬之地. 山林廣野, 水草俱足, 任性畜牧, 因此良馬多產, 歲益蕃息」.

51) 『성종실록』 권 275, 성종 24년 3월 16일, 「我國諸道牧場多良馬, 而濟州尤最, 良馬不爲乏也」.

52)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목마한 것은 원이 제주를 지배하던 충렬왕 2년(1276)에 탐자적(塔刺赤)을 탐라총관부(耽羅總管府)의 달로화적(達魯花赤)으로 임명하고 말 160필을 보내어 수산평에 방목하면서부터였다.

53) 섬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조정에서는 마정에 중점을 둔 행정 조직을 갖추어 다른 목장에 비해 특수한 조직을 갖게 되었다. 7차례 걸친 개편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남도영, 「제주도 마정사」 『마문화연구총서』 V(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187~194쪽 참조.

54) 『세종실록』 권 108, 세종 27년 5월 28일, 「然濟州一島, 號稱蕃息, 其數止於九千七百九十二匹. 諸道蕃息, 雖曰多矣, 止於二萬二千四百六匹, 而每歲散於民間者, 未滿千數」.

55) 『세종실록』 권 111, 세종 28년 3월 6일, 「司僕寺啓, 濟州元放馬三千八百一十四, 大靜二千九十四, 旌義三千八百八十四, 而孳產惟一千一百六十四, 損失至一千九百九十四」.

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전국에의 공마수는 약 22,406필 정도이며, 나)의 기록에는 제주목마가 제주 3,810필, 대정 2,090필, 정의 3,380필로 총 9,280필임을 알 수 있다. 즉 제주의 목마는 9,280필~9,792필로 전국 목마의 약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5세기 제주목마의 규모는 타지방에 비해 방대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조선후기 제주 말의 규모에 대한 기록이 여러 문헌의 기록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와 더불어 다른 문헌을 참고하여 조선후기 마필의 규모를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4 > 제주 마필(馬匹)의 시기별 현황

(단위 : 필)

| 목장명 \ 시기 | 1653년 | 1777년 | 1793년 | 1841년 |
|----------|--------|-------|-------|-------|
| 제주목 | 6,450 | 5,481 | 4,935 | 3,324 |
| 대정현 | 2,552 | 911 | 863 | 778 |
| 정의현 | 2,383 | 1,642 | 1,715 | 1,156 |
| 산 장 | - | - | 1,672 | 1,418 |
| 우도장 | - | - | 310 | 275 |
| 모동장 | - | - | 8 | - |
| 별둔장 | - | - | - | 44 |
| 합 계 | 11,385 | 8,034 | 9,503 | 6,995 |

※ 이원진 『탐라지』, 『탐라사례』,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지초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4>를 보면 17세기 마필의 수가 11,385필이었으나 18세기후반 8,000~9,500여필로 10,000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에는 7,000필 미만으로 마필의 수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조선시대 임란 이후 전국의 목장이 화포 또는 전략무기의 전래, 농경지로의 개간에 영향을 받아 폐지 또는 축소되었는데, 제주도에서도 영·정조대의 가뭄과 흉년으로 인한 목장지의 개간과 목자들의 피해로 목장의 폐장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영의정이 말하기를 "강화목장의 말은 1천여 필입니다. 강화에 소속된 섬은 다섯이요,

남양에 소속된 섬은 넷이요, 인천에 소속된 섬은 셋입니다. 말이 혹은 1백여필, 혹은 5, 60필, 혹은 3, 4백필인데, 흥청도의 광활한 섬을 택하여 본부의 말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병자년에 옮겨 놓지 않고 목장을 축소하였으므로 2백 필이 쓰러져 죽는 일이 생겼 습니다. 만약 전과 같이 한다면 말의 손실이 클 것입니다. 가을 수확기를 기다려서 옮겨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목장을 철폐하고 백성에게 경작을 허용함은 비록 좋긴 하나, 철폐한 뒤 백성은 들어 가지 않고 사대부가 불법 점유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 마 정도 중요한 일이므로 경솔히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하였다. … 조계원이 말하기를 “민정은 모두 혁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이 목장을 지금 만약 철폐하지 않으면 공자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말을 천히 여긴 뜻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 목장을 철폐해야 한다는 논의는 무오년(광해군 10년, 1618) 부터 있어 왔습니다.”⁵⁶⁾

위의 내용은 인조 27년(1649) 목장 철폐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광해군 10년(1618)부터 목장의 폐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으며, 또한 백성들이 대부분 목장을 철폐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목장의 폐장현상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보다 늦은 1770년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1790년경부터 각 목장의 범경처(犯耕處)에 징곡(徵穀)을 단행하여 마감과 목자의 료미(料米)로 대체할 정도로 목장지역에서 농경지 개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⁷⁾ 또한 중앙에서도 국용마 조달이 분양마제도를 통해 해결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목장을 유지하기보다 경작지로 전환하려는 추세였다.⁵⁸⁾ 이에 목장지역의 개간현상이 가속화되어 1800년대 후반부터 십소장 역시 폐장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1894년부터 감목관제와 공마제도가 폐지되어 공마수송이 종료되었으며, 1897년부터는 공마를 금전납으로 대신함으로써 관설목장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목장 폐장화는 목자의 역에 오히려 유실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워 목자들을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후기 제주 소의 규모 또한 여러 문헌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56) 『비변사등록』 인조 27년 4월 23일,

57) 박찬식, 「17·8세기 제주도 목자의 실태」 『제주문화연구』(제주문화, 1993), 491쪽.

58) 김경욱, 『조선후기 도서연구』(혜안, 2004), 258쪽.

< 표 5 > 제주 우수(牛首)의 시기별 현황

(단위 : 수)

| 시기 | 1777년 | 1780~1789년 | 1793년 | 1841년 |
|--------|-------|------------|-------|-------|
| 우목장 | | | | |
| 황 태 장 | 620 | 530 | 710 | 620 |
| 모 동 장 | 637 | 203 | 303 | 637 |
| 천 미 장 | 1,299 | 440 | 707 | 1,114 |
| 가파도별둔장 | 67 | 103 | 75 | 72 |
| 합 계 | 2,623 | 1,276 | 1,795 | 2,443 |

※ 『탐라사례』,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지초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5>를 보아 제주 소의 생산량은 1777년 2,600여두가 생산되었으나 1780년대 감소하여 1,200두였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여 1840년대에 2,400여두가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특히 천미장에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천미장의 우목이 활발하였던 것을 알 수 있겠다.

<표 4>, <표 5>와 같이 생산되었던 제주의 말과 소는 매년 육지로 수송하여 조정에 바쳤다.

조선전기 세공마와 3명일진상마의 봉진이 있었으나 조선후기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보내는 세공마, 3명일진상마 외에 연례진상마와 3년마다 보내는 식년공마 등이 있었으며, 이 밖에 체임마, 노태마, 흥구마 등이 추가되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당시 제주에서 행하였던 진상의 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후기 우마 진상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6 > 조선후기 제주 우마 진상의 현황

| 시 기 | 내 용 |
|---------------|--|
| 인조 5년 10월 9일 | 제향에 쓸 흑우를 제주에서 내어다 충청도에 나누어 사육 |
| 인조 7년 7월 28일 | 제주에서 연례적으로 세공으로 진상하는 말을 도착하는 즉시 처리. 기사년 조 세공마 100필 중 62필이 도착 |
| 인조 16년 2월 24일 | 제주에서 보낸 흥구마를 각 관에 분양 어려워 처리를 논의 |
| 인조 19년 8월 11일 | 제주의 세공마 100필을 더해 200필을 바치게 함 |

| | |
|----------------|--|
| 인조 25년 8월 12일 | 제주에서 어승마 20필,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진상마 60필, 차비마 80필 총 168필을 진상 |
| 인조 26년 9월 14일 | 제주에서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진상마 60필 진상 |
| 효종 9년 8월 28일 | 제주에서 진상마 8필, 삼명일 진상마 60필, 흥구마 53필 진상 |
| 현종 1년 7월 21일 | 제주에서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진상마 60필, 흥구마 40필 진상 |
| 현종 5년 7월 15일 | 제주에서 세공마(歲貢馬) 2백필을 진상 |
| 현종 5년 12월 4일 | 제주 관관 나팔기(羅八紀)가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3필을 진상 |
| 현종 10년 8월 9일 | 제주에서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 진상마 60필, 흥구마 암수 각 64필, 산둔잡종마 13필, 노태마 암수 각 20필, 총 165필 중 150필 바침 |
| 숙종 원년 8월 3일 | 제주에서 연례진상마 8필, 어승마 20필, 차비진상마 80필, 삼명일진상마 60필, 총 168필 중 166필 바침 |
| 숙종 3년 7월 13일 |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진상마 60필, 흥구마·노태마 각 25필, 합 93필 중 90필 진상 제주목사 윤창형(尹昌亨)이 정해진 공상(貢上) 이외에 따로 좋은 말 10필을 바침 |
| 숙종 4년 7월 2일 | 제주에서 연례진상마 8필, 어승마 20필, 삼명일진상마 60필, 차비진상마 80필, 합 168필 중 165필 바침 |
| 숙종 10년 7월 23일 | 제주에서 진상마 도착 |
| 숙종 14년 8월 3일 | 제주공마 도착 |
| 숙종 16년 8월 3일 | 제주에서 말 318필 바침 |
| 숙종 24년 8월 2일 | 제주에서 말 192필을 바침 |
| 숙종 29년 7월 21일 | 제주에서 양마(良馬)를 진상 |
| 경종 3년 7월 22일 | 제주에서 말 308필 진상 |
| 경종 4년 8월 2일 | 제주에서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진상마 57필, 흥구마 12필, 노태마 5필, 총 82필 진상 |
| 영조 원년 7월 28일 | 제주에서 27필의 말 바침 |
| 영조 2년 8월 9일 | 제주에서 65필의 말 바침 |
| 영조 12년 5월 21일 | 제주 김하필(金夏弼)이 개인 말 2백 필(匹)을 바치고자 함 |
| 영조 46년 윤5월 18일 | 제주의 전 관관 한상유(韓尙裕)가 말 3필을 진상 |
| 정조 21년 8월 2일 | 제주 목사 유사모(柳師模)가 어승마를 진상 |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 표 6 > 에서 보듯이 조선후기 말의 봉진은 세공마, 연례진상마, 삼명일, 흥

구마, 노태마, 산마 등 여러 종류의 내역으로 바쳐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에서 보낸 말이 도착하면 각 관에 나누어 주는 것과 흑우도 충청도에 나누어 사육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진상되었던 말의 수량을 살펴보면 흥구마의 경우 효종 9년(1658)에는 53필, 현종 1년(1660)에 40필, 현종 10년(1669)에는 32필, 숙종 3년(1677)에 25필, 경종 4년(1724)에는 12필로 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흥구마 진상의 수량 경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진상하였을 때 수량과 조정에 도착한 수량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진상물 운송과 먼 행로에 있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주 어승마 20필,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진상마 60필, 차비마 80필, 모두 168필 중 1필은 강진에서 잃어버려 그 나머지 167필이 도착하였다.⁵⁹⁾

나) 제주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진상마 60필 모두 68필 중에 1필은 진안에서 병들어 그 나머지 67필이 왔다.⁶⁰⁾

다) 제주(濟州)에서 바치는 세공마(歲貢馬) 1백 필(匹)을 이 해부터 1백 필을 더하여 상규로 삼았다.⁶¹⁾
제주도에서 세공마(歲貢馬) 2백필을 진상하였다.⁶²⁾

라) 제주의 연례진상마 8필, 어승마 20필, 삼명일진상마 60필, 차비진상마 80필, 총 168필 중 3필은 수원에서 잃어버려 그 나머지 165필이 도착하였다.⁶³⁾

위의 기록 가)와 나), 라)에서와 같이 조선후기 제주에서 말의 진상은 연례마 8필, 삼명일진상마 60필, 어승마 20필, 차비마 80필을 바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말의 진상과 더불어 제주에서 진상 수량을 모두 맞추어 출발하여도 진상물을 실은 배나 조정까지 가는 도중에 잃어버리거나 병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

59)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8월 12일, 「濟州點馬所捉, 再運上來, 御乘馬二十四, 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四, 差備馬八十四, 共一百六十八匹內, 一匹到康津船所故失, 其餘一百六十七匹」.

60)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9월 14일, 「濟州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四, 共六十八匹內, 一匹到鎮安病留, 其餘六十七匹」.

61) 『인조실록』 권 42, 인조 19년 8월 11일, 「濟州歲貢馬一百匹, 是歲又加一百匹, 以爲常」.

62) 『현종실록』 권 11, 현종 5년 7월 15일, 「濟州進歲貢馬二百匹」.

63) 『승정원일기』 숙종 4년 7월 2일, 「濟州先運年例進上馬八匹, 御乘馬二十四, 三名日進上馬六十四, 差備進上馬八十四, 合一百六十八匹內, 三匹, 到水原放逸, 其餘一百六十五匹, 來到本寺, 禾毛色, 開錄以入之意, 敢啓」.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주목사의 불찰로 그 죄를 묻기도 하였으며 나머지 물량을 다시 채워 봉진하여야 하는 등 많은 폐단이 야기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위 사료 다)에서는 매해 100필씩 바치던 세공마가 인조 19년(1941)부터 200필로 증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료는 중앙에 도착한 마필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 제주에서 당초 바쳤던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여러 읍지에 나타나고 있는 기록을 토대로 조선후기 말의 진상 종류와 마필수를 시대별로 정리하면 < 표 7 >과 같다.

< 표 7 > 조선후기 제주 우마진상의 종류와 수량

(단위 : 필, 수)

| 시 기 | 내 역 |
|--------------------|---|
| 17세기 후반 | 세공마 100필(식년에는 어승마 20필, 차비마 80필, 흥구마 100필 진상), 삼명일마 탄일·동지·정조에 각 20필, 연례진상마 8필, 체임진상마 목사·관관은 각 3필, 현감은 각 2필 |
| 18세기 전반 | 세공마 200필, 어승마 20필, 차비마 80필, 삼명일마 각 20필, 연례진상마 8필, 흥구마 32필, 노태마 33필, 흑우 20수 |
| 18세기 후반 | 세공마 200필, 어승마 10필(3년 1봉), 차비마 60필(3년 1봉), 갑마 200필(3년 1봉), 삼명일 60필, 연례진상마 8필, 감목관연례마 2필(2년 1봉), 흥구마 10필(3년 1봉), 노태마 10필(3년 1봉), 체임진상마 3필, 흑우 40수 |
| 19세기 전반 | 세공마 200필, 어승마 20필, 차비마 80필, 산둔갑마 200필, 삼명일 60필, 연례진상마 8필, 흥구마 10필, 노태마 10필, 체임진상마 3필, 흑우 42수 |
| 19세기 중반 (1841년) | 세공마 200필, 어승마 20필(3년 1봉), 차비마 60필(3년 1봉), 갑마 200필(3년 1봉), 삼명일마 60필, 연례진상마 8필, 감목관연례마 2필(2년 1봉), 흥구마 10필, 노태마 10필, 체임진상마 3필, 흑우 42수 |
| 19세기 중반 (1854년) | 세공마 200필, 어승마 20필(3년 1봉), 차비마 80필(3년 1봉), 산마 200필(3년 1봉), 삼명일마 60필, 연례진상마 8필, 흥구마 10필, 노태마 10필, 체임진상마 3필, 흑우 42수 |

※ 이원진 『탐라지』, 이형상 『탐라순력도·남환박물』,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사례』, 『탐라지초본』, 『탐영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표 7> 로 보아 제주에서 진상하는 말의 수량변화를 알 수 있는데, 우선 세공마(歲貢馬)의 경우 태조 7년 100필을 바치도록 정해졌지만, 인조 19년(1641)에 100필이 추가되어 200필로 규정되어 이후 계속 200필을 바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년공마는 인조 20(1642)년에 어승마 20필, 차비마 80필 총 100필로 신설되었는데, 현종대에 500필⁶⁴⁾로 증가하였고, 숙종대에는 공마 200필, 어승마 20필, 차비마 80필 총 300필을 바치게 하였다. 영조대에는 산둔갑마로 200필⁶⁵⁾만 바치게 하였다.

어승마와 차비마는 정조대에 다시 정하여졌으나 이전보다 적은 70필이었다가 19세기 100필로 확정되었다.

3명일 진상마는 정조·동지·탄일에 바치는 것으로 국초에 각 4필씩 총 12필로 정하였으나, 그 후 태종 12년(1412)에 각 10필씩 30필로 증가되었고⁶⁶⁾, 동왕 13년에 각 20필씩 총 60필로 확정되었다.⁶⁷⁾

연례진상마는 8필을 바쳤으며, 흉구마(凶咎馬)는 32필이던 것이 17세기 중반 이형상 목사 재임당시 10필로, 노태마(駑駘馬) 또한 33필이었다가 10필로 바뀌었다.

체임진상마는 제주 3읍 수령이 교체되었을 때 국왕에게 바치는 말이다. 17세기 중반부터 10필을 바쳤는데 제주목사와 판관은 각 3필씩,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은 각 2필씩 바쳤다. 그러나 재임기간이 20개월이 차지 않으면, 봉진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후기 제주에서 바치는 공마는 연례공마가 적게는 298필에서 많으면 343필, 식년공마는 18세기 이후는 200필에서 300필, 부정기적인 체임진상마가 10필로 제주에서 중앙으로 상납한 공마의 수는 평년에는 300필에 가까웠으며 식년(式年)에는 600필에 가까웠다.

국가의 주요한 제사의 제향용으로 쓰였던 흑우는 원래 15마리로 정하였으나, 이형상 목사 재임시 20마리를 바쳤다. 그러나 이후 중앙에서 흑우의 대한 요구가 늘어나 18세기 40마리, 19세기 42마리로 그 수요가 대폭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상으로 마련된 말 이외에도 사사로이 말을 바치는 경우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가) 고봉례(高鳳禮) 집에서 사사로이 말 2필을 바쳤다.⁶⁸⁾

64) 『현종실록』 권 19, 현종 12년 1월 23일, 「濟州式年例貢馬五百匹, 今當上來」.

65) 『영조실록』 권 21, 영조 5년 3월 7일, 「命濟州式年貢馬時山馬, 限二百匹上送」.

66) 『태종실록』 권 23, 태종 12년 4월 26일, 「誕日進上十四」.

67) 『태종실록』 권 26, 태종 13년 7월 20일, 「命濟州, 於冬至正朝誕日, 進馬二十四」.

68) 『태종실록』 권 23, 태종 12년 4월 26일, 「高鳳禮私進二匹」.

제주(濟州) 사람 생원(生員) 고득중(高得宗)이 말 3필을 바치니, 쌀과 콩을 35 석 내려 주었다.⁶⁹⁾

나) 제주 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이 정해진 공상(貢上) 이외에 따로 좋은 말 10필을 바쳤다.⁷⁰⁾

다) 제주목사가 상계하기를, 본주 유학생 김하필이 사사로이 말 200필을 국조에 바치길 원한다고 하였다.⁷¹⁾

위의 사료 가)는 고봉레라는 사람이 사사로이 말 2필, 생원 고득중이 말 3필을 바친 것을 기록한 것이며, 사료 나)는 제주목사 윤창형이 사사로이 좋은 말 10필을 바쳤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사료 다)에서는 유학생 김하필이 말 200필을 바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정해진 공상 외에 사적인 용도를 위해 따로 바친 경우임을 알 수 있겠다.

이렇듯 제주에서 봉진하였던 막대한 말의 용도는 군마로 많이 이용되었고, 운반, 농경, 교통, 통신, 종마, 외교 등에 유용하였다.

제주 소 또한 농경과 운반에 이용되었으며, 특히 제주 흑우는 뿔이 아름답다는 평을 받아 중시되었으며 조정의 제향용으로 쓰였다.⁷²⁾

2. 우마 진상에 따른 폐해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제주 목장을 중요시하여 발달시켰다. 이에 제주민들 다수가 목자로 충원되어 국역에 종사하여야 했다. 목자의 역은 제주 지역에서 육고역 가운데 하나로 불리울 정도로 고된 역이었다. 또한 말의 진상은 관영목장에

69) 『태종실록』 권 26, 태종 13년 11월 24일, 「濟州人生員高得宗進馬三四, 賜米豆三十五石」.

70) 『숙종실록』 권 6, 숙종 3년 7월 13일, 「濟州牧使尹昌亨常貢外, 別獻名馬十四」.

71)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21일, 「在魯曰, 此則濟州牧使金譽狀啓也 以爲本州幼學金夏弼, 以其私曹馬二百匹, 願納於國曹. 金夏弼以本州土民, 持身行事, 大爲一島所推重, 私馬願納」.

72) 『정조실록』 권 18, 정조 8년 11월 29일, 「祭享黑牛, 係是莫重薦獻之需」.

서 조달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일반민호에 강제적으로 부담했으며 탐리들이 진상을 빙자하여 사적으로 말을 징발하는 경우와 준마를 3읍 관리들이 빼앗아 버리는 등 진상마 조달 단계에서 탐리들의 횡폭으로 목자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큰 폐해가 되었다. 제주 목자들의 고충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도(諸道)의 목자들이 유실한 말의 대가를 치르느라 거의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⁷³⁾

나) 목자는 가장 고역이라고 하는데도 보인(保人)이 없는 40여 명이 많은 말들을 보살피고 있으니, 다른 잡역도 아주 고되다는 것을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인근 고을 사람들이 대정현을 마치 구덩이처럼 보고 있으니, 변통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⁷⁴⁾

다) 사복시(司僕寺)의 관원이 기내(畿內)에서 점마(點馬)하였는데, 거느린 하인들이 각 목장의 목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먼저 수기(手記)를 받아 독촉을 심히 하니, 목자들이 가산(家産)을 전당(典當)하면서 연달아 경중(京中)에 실어다 두게 되어 원성이 여염 마을에 가득찼다.⁷⁵⁾

라) 사복시(司僕寺) 도제조 김상복(金相福)이 아뢰기를, “초도(椒島)에서 기르는 말 3백 21필 가운데 지금 2백 53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수만큼 목자로 하여금 사다가 보충시켜 놓으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⁷⁶⁾

위 상기한 사료 가)에서는 조선시대 제주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의 목자에 대한 실태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 지방의 목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생활에 처해있음

73) 『인조실록』 권 33, 인조 14년 10월 12일, 「諸道牧子等, 以遺失馬微價, 幾不能保存, 提調李曙, 許令牛犢代價, 遂多孳息」.

74) 『현종실록』 권 12, 현종 5년 11월 10일, 「牧子最號苦役, 而只以無保者四十餘名, 看護群馬, 其他雜役之偏苦, 可據而知也. 傍邑之人, 視大靜有若坑塹, 不可無變通之道矣」.

75) 『숙종실록』 권 50, 숙종 37년 12월 2일, 「司僕寺官員, 點馬于畿內, 所率下人, 索賂於各牧場牧子輩. 先受手記, 督迫甚急, 牧子輩典當家産, 陸續輸置于京中, 怨號遍於閭里」.

76) 『영조실록』 권 125, 영조 51년 7월 30일, 「司僕都提調金相福奏曰 椒島牧馬三百二十一匹內, 今遺失爲二百五十三匹. 其遺失之數, 令牧子備納買立宜矣. 上許之」.

을 알 수 있다. 사료 나)에서는 제주목 대정현의 목자에 관한 기록으로 그 역이 심함을 알 수 있다. 목자는 말을 보살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잡역까지 있어 매우 고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다)에서도 목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가산을 탕진하는 등의 폐혜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사료 라)에서는 잃어버린 말을 목자의 책임으로 지워져 개인의 재산으로 말을 사서 충당하게 명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많은 목자들이 고역을 견디지 못해 결국 피역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제주 목장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제주도민 대다수가 고역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 목자들은 타 지방에 비해 심한 고역에 시달렸다. 조선시대 목자들이 우마 생산의 역에 종사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목자위전(牧者位田)을 지급받았으나 제주 목자들은 목자위전의 지급이 예전부터 없었으며, 목마와 목우의 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제주 목자들에게는 동색마(同色馬)라는 문제가 큰 폐단의 요인이 되었는데⁷⁷⁾ 동색마와 관련된 내용이 이건의 『제주풍토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자라 함은 말을 말아서 이것을 목양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 겨울과 춘초(春草)에 풀이 고사한 때에 말이 기아로 죽는 수가 불가승기(不可勝紀)인 것이다. 치사(致死)될 경우에는 목자는 즉시 가죽을 벗겨서 관에 납부하면 관에서는 마적에 기재된 가죽과 빙고하여 모색(毛色)이 상부(相符)되어야 그 가죽을 봉납하게 되므로 혹 차착(差錯)이 있거나 모피에 손상의 흔적이 있을 때는 이것을 퇴하여 봉납하지 않고 그 말을 목자에게 징하는 것이니 이것을 동색마(同色馬)라고 부른다. ... 폐사마의 모색이 마적과 틀리지 않고 피모에도 손상처가 없더라도 온갖 백계를 다 써서 고의로 가죽을 퇴하여 말로서 징하였다.

위 사료로 보아 말이 죽었을 경우 원래 마적의 모색과 비교하여 다르거나 모피에 손상이 있을 때 고실마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로 변상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색마를 판정하는 기준이 애매하여 관에서는 더욱 징발하기가 쉬었으며 이에 관리들이 중앙으로부터 문책을 면하기 위하여 일부러 동색마의 수를 늘리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색마 징출의 폐단으로 인해 제주 목자들이 파

77) 박찬식, 「17·8세기 제주도 목자의 실태」 『제주문화연구』(제주문화, 1993).

산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목자는 본시 남루한 의복의 극빈자인 만큼 변상할 말을 사는데 힘이 부족하므로 농토와 농우를 탕매하고 또 부족하면 술과 농기구 등의 물건들까지도 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근히 이를 매납한 후에 만일 또 말이 죽는 때에는 그 목자는 또 다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징마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5, 6필 혹은 10여필이나 비납(備納)하게 되는 목자에 있어서는 그 힘이 기진하여 어쩔 수가 없게 되면 관가에서는 그 자의 원근(遠近) 일족을 초출하여 그들에게 분정시켜 징납한다. 이런고로 목자의 역을 하는 것이 심히 고통스러운 일로서 이 임(任)을 지냈다고 하면 파가(破家)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그 징마에 견딜수가 없으므로 그 목자를 죽여 이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자도 간혹 있는 것이다.⁷⁸⁾

위 기록으로 보아 동색마의 폐단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동색마로 인해 목자들은 농토와 농우 뿐만 아니라 술, 농기구 등의 물건까지 팔아야 했으며 죽은 말이 10여필이나 되는 목자는 원근 일족에까지 분정시켰다. 이에 목자의 역이 매우 고통스러워 파가하지 않은 자가 없으며 징마를 견딜 수가 없어 목숨을 끊어 모면하려 하는 자도 있다는 내용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폐단에 시달리던 목자들은 이를 면하기 위하여 여러 방도를 강구하게 되는데, 동색마 징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을 방목시키지 않는 등 축마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이에 말이 번식되지 않고 수척하여 좋은 품종이 생산되지 않았다.

또한 진상으로 1년에 바치는 말이 4~5백필, 말 안장이 4~5십부, 사슴 가죽 5~6십령, 사슴 혀 5~6십개, 사슴 꼬리 5~6십개, 말린 사슴 고기 2백여조, 말에 입히는 여러 기구들 680여부⁷⁹⁾ 등을 마련해야했기 때문에 역의 과다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우마진상에 관한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는데 김상헌의 『남사록』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봉송마의 폐이다. 삼읍 수령은 다 그 경내의 품관과 백성으로서 말이 있는 자를 기록하고 혹은 전마다 혹은 상의 명에 따라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공공연하게 억지로 취하고 전례를 삼아 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원을 품어 호소하기를 “보도는 전지

78) 이견, 『제주풍토기』

79) 이형상, 『남환박물』 지공조.

(田地)가 이미 심하게 척박하고, 솜과 실도 모두 토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의식은 오직 축산으로 자산을 삼고 있으니 말 한마리를 빼앗기면 열 식구가 기한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생산가의 폐이다. 삼읍에 또 소 있는 사람의 치부가 있어서 생산가(生産價)라고 칭하고 장부에 의하여 끌어다가 날마다 죽여서 주방의 요식용에 충당하며, 만약 수령이 유연(遊宴)을 함부로 하게 되면 1년 소용이 3, 4백마리에 달한다고 하였다.

경래관의 점마의 폐이다. 본주 목사는 으레 매해 춘추에 말을 몰아 점렬하고, 만약 털빛이 어승(御乘)에 쓸만한 것이 있으면 비록 민간 사둔 말이라 할지라도 또한 다 관가에 맡겨 길러서 진상에 충용한다. 이 행은 해마다 3, 4월에 들어오고 돌아가며 7, 8월에 나가고 온다. 그 동안 농사 일이 한창 바쁘며, 장소를 벌여 점렬 할 때에는 삼읍 백성이 모두 다 경래관을 모시고 빈곤한 사람을 구제하며 안심시키는 일에 분주하게 된다.

이것들이 폐에서 가장 큰 것이요, 또 상공에 무익한 것과 얻기 어려운 것과 바다에서 나는 귀중한 것이 백성을 화(禍)되게 하는 것이요, 또 수령이 주구침착하고, 아무 명목 없이 억지로 뺏아가는 일이 종종 있으니 한심함을 다 말할 수 없다.⁸⁰⁾

위 내용은 제주지역의 진상에 따른 폐단 내용으로 말과 관련해서 세가지를 기록하였다. 첫째는 삼읍의 수령이 좋은 말이 있는자를 기록했다가 억지로 취하는데 이는 당시 전례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축산으로 살아가는 제주민들은 말 한 마리를 빼앗기면 열 식구가 기한을 면치 못하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소를 요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연희 때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수령이 함부로 유연(遊宴)을 하면 1년동안 사용하는 소가 300~400마리에 달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목사가 봄과 가을에 점마하는데 어승에 적당한 말인 경우 민간의 말까지 진상으로 충용하였으며 그 시기가 농사일이 바쁜 때에 하여 농사일을 그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는 당시 제주민들이 우마봉진에 의해 겪는 부담으로 목자 뿐만 아니라 도민들까지 고역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80) 김상헌, 『남사록』, 권 4, 11월 18일 임자조.

IV. 감귤진상의 실상

감귤은 제주의 특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약용⁸¹⁾, 생과용, 제향천신용으로 중요시되었다. 세조 원년(1455) 12월 제주 목사에게 유시한 바에 의하면 “감귤은 종묘에 천신하고, 빈객을 대접하므로 그 쓰임이 매우 절실하다”⁸²⁾고 기록되어 있으며 말 진상과 함께 중요한 지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귤은 제향천신에 해당되는 물건이므로 그 재배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게다가 재배지가 실질적으로 제주로 한정되어 있어 조선시대 제주 감귤에 대한 조정의 관심은 매우 지대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의 귤은 주로 천신이나 진상으로 바쳐졌으며, 국왕은 감시(柑試)나 신하들에게 특별한 예우를 하는 상징으로 나누어줄 정도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매년 20운 걸쳐 바쳐졌던 감귤 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감귤진상의 내역

감귤재배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안지방의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제주도가 감귤 재배에 있어 가장 적합하며 전국 감귤의 99.9%를 생산하고 있다.⁸³⁾

조선시대 초기부터 고려조의 유제를 답습하여 관영(官營)과원을 강력히 추진·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관영과원의 생산이 적은 실정으로 막대한

81) 약용에 대해서는 허준의 『동의보감』탕액편에 나타나는데, 주로 귤피, 핵, 청귤피 등의 약효 성능이 기록되어 있다.

82) 『세조실록』 권 2, 세조 원년 12월 25일, 「柑橋薦宗廟, 供賓客, 其用甚切」.

83) 감귤 재배는 연평균 기온이 15°C~18°C 이며, 겨울철 최저 기온이 -5°C~-6°C이하로 내려 가지 않는 곳 이라야 재배가 가능하다. 오윤옥, 「제주도 감귤재배의 기원과 분포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5쪽.

양의 감귤진상은 농가 생산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감귤진상은 조선 초기 태조 1년(1392)에 공부상정도감의 상서문을 통해 귤과 유자와 같은 것은 별공(別貢)으로 하게 한 후⁸⁴⁾ 태종 6년(1406)에 좌정승(左政丞) 하륜(河崮)에 의해 과실세를 제정⁸⁵⁾하였고 태종 8년(1408)이 이르러 제주에 공부제가 실시되었다. 태종 12년(1412)에 시물(時物)을 종묘에 천신하도록 명하였는데 10월에 감귤을 종묘에 천신하도록 하였다.⁸⁶⁾

감귤은 제주의 특산으로서 산물(酸物)이라고 총칭하였고 봉진의 시기는 생산되는 계절에 따라 정하였으며 다른 것과 달리 20운(運)으로 나누어 봉진케 하였다.

조선후기 감귤을 봉진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8 > 조선후기 감귤봉진과 황감제 시행 현황

| 시 기 | 내 용 |
|----------------|-------------------------------------|
| 인조 7년 3월 19일 | 제주에서 유감, 동정귤, 감자 진상 |
| 숙종 5년 2월 1일 | 제주에서 감귤 바침. 천신감귤(금귤,감자,유감,동정귤)은 표류됨 |
| 숙종 8년 1월 14일 | 제주목사가 유감, 동정귤 바침 |
| 숙종 13년 12월 14일 | 제주목사가 당금귤, 감자 등을 바침 |
| 숙종 17년 2월 6일 | 제주에서 감귤(甘橘)을 바침 |
| 숙종 22년 2월 2일 | 제주에서 전년 11월초 봉진한 감자 도착 |
| 숙종 30년 12월 17일 | 제주목사가 11월령 유감, 동정귤 도착 |
| 숙종 41년 11월 28일 | 감제(柑製)를 시행함 |
| 경종 4년 4월 14일 | 제주에서 2월령 청귤 도착. |
| 영조 1년 11월 11일 | 황감제(黃柑製)를 설행(設行) |
| 영조 7년 12월 5일 | 반궁(泮宮)에서 황감제(黃柑製) 시행 |
| 영조 10년 12월 14일 | 황감제(黃柑製)를 설행 |

84) 『태조실록』 권 2, 태조 1년 10월 12일, 「其時物之不可爲常貢者, 則列於常貢之外, 名之曰別貢, 如橘柚之類是已」.

85)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11월 23일, 「人家代田外山野所種菓實, 十分稅一」.

86) 『태종실록』 권 24, 태종 12년 8월 8일, 「命以時物薦宗廟 …十月柑橘」.

| | |
|-----------------|-----------------------------|
| 영조 20년 12월 2일 | 감제(柑製)를 설행 |
| 영조 24년 9월 17일 | 감제(柑製)를 설행 |
| 영조 33년 10월 22일 | 제주에서 감귤(柑橋)을 진공 |
| 영조 35년 11월 20일 | 제주에서 유자(柚子)를 진상 |
| 영조 42년 11월 25일 | 제주에서 황감을 천신 |
| 영조 47년 11월 30일 | 제주에서 감귤을 바침 |
| 영조 51년 윤10월 25일 | 제주에서 감귤(柑橋)을 바침 |
| 정조 2년 8월 5일 | 제주목에서 종묘에 천신(薦新)할 청귤(靑橋) 바침 |
| 정조 6년 11월 29일 | 감제(柑製)를 시행 |
| 정조 10년 12월 24일 | 황감제(黃柑製)시행 |
| 정조 11년 3월 24일 | 명광문(明光門)에 나아가 삼일제(三日製)를 설행 |
| 순조 1년 11월 19일 | 반궁(泮宮)에서 감제(柑製) 설행 |
| 순조 5년 12월 12일 | 춘당대(春塘臺)에 나가서 감제(柑製) 설행 |
| 순조 6년 11월 18일 | 반궁(泮宮)에서 감제(柑製)를 설행 |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 표 8 >에서 보듯이 조선후기 감귤의 진상이 꾸준히 바뀌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감귤진상의 종류도 다양하였는데, 인조 7년(1629)에는 유감, 동정귤, 감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숙종 5년(1679)에는 금귤이 추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숙종 13년(1687)에 와서는 당금귤까지 봉진하고 있다.

그리고 18세기부터는 황감제의 시행과 관련된 기록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귤봉진이 거의 해마다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겠다.

이로 보아 조선초 감자와 유자, 동정귤, 유감, 청귤 5종류만이 진상되었던 감귤의 물목이 조선후기 갈수록 점점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귤은 예외적으로 겨울을 넘겨서 다음해 2월에 별도로 바쳤지만, 다른 품목의 감귤은 대부분 겨울에 바친 것으로 보아 감귤 봉진의 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제주에서 감귤을 진상하여 오늘 도착하였으나 종묘천신 감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견이 그 연유를 알아보니 즉 종묘 천신 감귤을 싣은 배가 바다 중에 상실되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예조에 천신봉진 수를

물으니 즉 10월 초 천신 금귤 192통, 감자 168통, 12월 초 천신 유감 268통, 등 정귤 216통이라 합니다. 설령 후에 도착해도 진상이 도착한 후 천신의 예가 지체됩니다. 진상감자를 천신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⁸⁷⁾

나) 김창집이 아뢰기를, 제주의 감귤이 모두 바람에 떨어져 진상의 수를 채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⁸⁸⁾

다) 임금이 제주에서 유자(柚子)를 진상한 사람을 소견(召見)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쌀과 베를 제급(題給)하도록 하였다.⁸⁹⁾

라) 예조에서 아뢰길, 봉진하는 종묘에 천신(薦新)할 청귤(靑橘)은 곧 3월에 해야 하는데, 이를 영술하여 오던 교리(校吏)가 표류되어 소주(蘇州)에 이르렀다가 이제 비로소 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두 썩고 마르고 하여 천진(薦進)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천진하지 않을 것을 청한다고 하였다.⁹⁰⁾

사료 가)에서는 제주에는 종묘에 천신할 감귤이 표류되어 물선진상용 감자로 천신에 대신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료 나)에서는 제주의 풍채로 인해 감귤진상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유자를 진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라)에서는 3월에 바치는 청귤이 표류로 늦게 도착하여 모두 마르고 썩었다는 내용이다. 위 사료로 보아 감귤은 천신용과 진상용으로 나누어 봉진하였으며 특히 청귤은 3월에 바쳐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봉진되었던 감귤이 어떠한 품목이 얼마만큼의 양을 진상으로 바쳐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별로 종류와 수량을 정리해 보면

87) 『승정원일기』 숙종 5년 2월 1일, 「以司饗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柑橘進上 今始來到, 而聞宗廟薦新次柑橘, 不爲來到云. 臣招問曲折於濟州陪持人, 則以爲宗廟薦新次柑橘所載船, 相失於海中, 不知去處云. 臣招考年例薦新封進之數於禮曹, 則十月朔薦金橘一百九十二箇, 柑子一百六十八箇, 十二月朔薦乳柑二百十六箇, 洞庭橘二百十六箇矣. 設或追後來到, 進上既到之後, 薦新之禮, 遲延等待, 不無未安 … 進上柑子, 先爲薦新, 可也」.

88) 『비변사등록』 숙종 39년 11월 21일

89) 『영조실록』 권 94, 영조 35년 11월 20일, 「上召見濟州柚子進上人, 令該曹, 米布題給」.

90) 『정조실록』 권 2, 정조 2년 8월 5일, 「禮曹啓言 濟州牧封進宗廟薦新靑橘, 卽三月令. 而領來校吏, 漂至蘇州, 今始來納. 已盡腐枯, 不合於薦進. 命勿薦進」.

다음 < 표 9 >와 같다.

< 표 9 > 감귤진상의 종류와 수량

| | | (단위 : 개) |
|---------|--|---|
| 시 기 | 내 역 | 합 계 |
| 17세기 중반 | 2월령 청귤 1,250개 9월령 유자 1,850개 10월령, 11월령(20운 진상) 초운 금귤 880개, 감자 1,550개 2운~7운 감자 각 3,450개, 금귤 각 300개 8운 유감 1,400개, 동정귤 980개, 감자 1,290개 9운~18운 감자 각 3,300개, 유감 각 300개, 동정귤각340개 19, 20운 감자·유감·동정귤 수량은 18운과 같다. 산귤 760개, 당유자는 결실수에 따라 봉진 | 감자 63,140 유자 1,850 금귤 2,680 유감 5,000 동정귤 5,060 청귤 1,250 산귤 760 총 79,740 |
| 18세기 후반 | 2월령 천신 청귤 270개, 각전궁(各殿宮) 청귤 510개 9월령 유자 1,710개 10월령 천신감자 253개, 당금귤 287개, 각전궁(各殿宮)감자 11,210개, 당금귤 1,380 11월령 천신유감 306개, 동정귤 288개, 당유자 84개, 각전궁 유감 2,340개, 동정귤 2,550개, 감자 19,790개, 산귤 700개, 대귤, 소귤, 당유자는 소결에 따라 봉진 | 감자 31,253 유자 1,710 유감 2,646 동정귤 2,838 청귤 780 산귤 700 당금귤 1,667 당유자 84 총 41,678 |
| 19세기 전반 | 2월령 천신청귤 306개, 진상 청귤 510개 9월령 유자 1,440개 10월령, 11월령 천신당금귤 319개, 진상당금귤 1,380개(금귤 대봉), 천신감자 281개, 진상감자 28,060(산귤대봉), 천신동정귤 324개, 진상동정귤 2,630(등자귤대봉), 천신유감 342개, 진상유감 2,420(금귤대봉), 산귤 580개, 대귤, 소귤, 동정귤은 소결에 따라 봉진 | 감자 28,341 유자 1,440 유감 2,762 동정귤 2,954 청귤 816 산귤 580 당금귤 1,699 총 38,592 |
| 19세기 중반 | 2월령 천신청귤 306개 진상청귤 510개 9월령 유자 1,440개 10월령 천신당금귤 319개, 진상금귤1,380개(당금귤대봉), 산귤 10,510개(감자대봉) 11월령 천신유감 342개, 동정귤 324개, 당유자 94개, 진상금귤 2,420개(유감대봉), 등자귤 2,630개(동정귤대봉), 산귤 18,515개(감자대봉), 산귤 580개 | 유자 1,440 유감 342 금귤 3,800 동정귤 324 청귤 816 산귤 29,605 당금귤 319 당유자 94 |

| | |
|--|-----------------------|
| | 등자귤 2,630 총 39,370 |
|--|-----------------------|

※ 이원진 『탐라지』,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사례』, 『탐라지초본』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 표 9 >에서 봉진 수량을 살펴보면 17세기 중반에는 약 8만개의 감귤이 봉진되었다. 1년에 바치는 수량으로는 아주 막대한 양이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절반 정도 감소한 4만여개를 봉진하였고, 19세기 전반과 후반에는 대체로 4만여개에 조금 못 미치는 수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감자와 유감, 동정귤과 당유자의 진상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와 반대로 금귤과 산귤의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당금귤은 18세기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진상용이 아니었던 등자귤도 19세기 진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금귤과 감자는 매년 대봉(代封)이 행하여졌다. 즉 수요가 부족하여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다른 품목으로 대봉(代捧)되었는데, 주로 당금귤은 금귤로, 감자는 산귤로 대봉되었다. 유감 또한 생산이 저조하여 거의 모두 천신용으로 소모 되어 나머지 물선진상은 금귤이나 산귤로 대봉되었다. 동정귤의 수요도 부족하여 거의 등자귤이나 산귤로 대봉되었다.

유일하게 청귤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귤과는 달리 규정 액수에 부족하지 않게 보내어졌다.

또한 감귤의 봉진 시기를 알 수 있는데, 청귤을 제외한 감귤은 대부분 9월부터 11월까지 천신용과 일반진상용 궤이 20운에 걸쳐 집중적으로 바쳐졌다.

명종 7년(1552)에 “제주에서 봉진(封進)하는 감귤(柑橘) 중에 진상(進上)하는 것이 먼저 도착하고 천신(薦新)으로 쓰이는 것은 뒤에 도착한다. 그러므로 으레 먼저 도착한 진상품을 나누어 천신에 쓰게 된다. 지금부터는 모든 절물(節物)을 봉진할 때 천신을 먼저 봉진하도록 팔도 감사에게 하서하라”⁹¹⁾고 하여 이후부터 천신용을 먼저 진상하고 있다. 이에 매년 9월은 제일 먼저 유자를 봉진하고, 10월 그믐에는 당금귤을 천신(祭享進上)용으로 예조⁹²⁾에 보낸다. 그리고 물선진상

91) 『명종실록』 권 13, 명조 7년 1월 17일, 「濟州封進柑橘, 進上則先到, 薦新則後到, 故例以先到進上, 分封薦新矣. 今後凡節物封進時, 先封薦新事, 八道監司處下書」.

92) 조선시대 제사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나누고 모든 제사는 예조를 비롯하여 봉상시, 사농시, 교서관이 그 직임을 분장하였다. 김한용, 「『탐라순력도』의 감귤산업사적 의의」 『탐라순력도연구논총』(제주도·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134쪽.

은 초운에서 7운까지 이루어졌는데 당금궐, 금궐, 감자 등이었다. 11월 그믐에는 유감, 동정궐, 당유자, 대궐, 소궐 등이 천신용과 물선진상용으로 8운~20운에 걸쳐 봉진되었다. 그리고 매년 2월 청궐이 천신용과 물선진상용으로 봉진되었다.

이렇게 봉진된 감궐은 천신용과 물선진상용으로 활용되었다. 천신용은 예조에 보내 조경묘(肇慶廟)·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효정전(孝定殿)·산릉(山陵)·휘정전(徽定殿)의 순서에 따라 제사에 천신 과일로 쓰였고 물선진상용 궐은 대전·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 등의 순서로 나누어졌다.

또한 감궐을 여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여 빈객을 대접할때의 쓰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가) 옥당의 관원들을 야대하였는데 감궐 한 쟁반을 하사하였다.⁹³⁾

나) 임금이 말하길, 근래 감궐을 반사할 적에 유생들의 앞을 다투어 탈취하기 때문에 분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일보다 더 극심하여 다투어 탈취하는 즈음에 거조가 해괴하였다고 한다. 명색이 선비로서 임금의 하사품이 중한 줄을 모르니, 더욱 한심한 일이다. 신칙(申飭)함이 옳다 하였다.⁹⁴⁾

다) 밤이 이미 깊었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물러가려고 하였는데, 임금이 각자에게 감궐을 한 쟁반씩 내려 주었다.⁹⁵⁾

위 사료 가)~다)는 임금이 신하들에게 감궐을 나누어주는 내용으로 당시 조정에서의 감궐에 대한 쓰임에 대해 나타나고 있으며 빈객의 접대와 하사품으로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사료 나)에서는 임금이 하사품으로 궐을 내릴 때 유생들이 앞 다투어 탈취하여 분란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2. 감궐진상에 의한 도민의 부담

93) 『숙종실록』 권 17, 숙종 12년 12월 18일, 「夜對玉堂官, 賜柑橘一盤」.

94) 『숙종실록』 권 33, 숙종 25년 1월 7일, 「近來賜柑時, 儒生輩爭先掠取, 以致紛亂, 今番尤有甚於前日, 爭取之際, 舉措駭異云. 以士子爲名, 不知君賜之爲重, 尤涉無據. 申飭可也」.

95) 『숙종실록』 권 45, 숙종 33년 1월 12일, 「夜已深, 諸臣欲退, 上賜柑橘各一盤」.

제주에서는 감귤을 1년에 24운으로 나누어 생산 시기에 따라 봉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감귤 봉진의 부담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공납의 대상이 아니었던 민호에까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부과하여 공물로 채워지고 있었다. 즉, 봉진수량이 관에서 기르는 귤로 부족하자 민간의 귤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귤 봉진의 양이 과다하다는 건의로 광해군 즉위년(1608)에 감자 봉진 24운을 20운으로 줄이게 되었다.⁹⁶⁾ 그러나 감자의 봉진이 20운으로 줄었으나 봉진의 절대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이와 더불어 감귤봉진에 있어서 여러 폐단이 일어났는데 김상헌 『남사록』에서 민가 고통의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⁹⁷⁾

매년 7, 8월에 목사는 촌가에 귤유 있는 곳을 순시하면서 주필로 낱알이 방점을 치고 문부에 적었다가 귤유가 익을 날이면 문부에 따라서 납품할 것을 조사하고 혹 바람과 비에 손상을 입거나 까마귀나 참새가 쪼아 먹는 것이 있으면 그 나머지를 집주인으로부터 징수하고 만약 납품하지 못할 때에는 책벌이 따랐다. 이 때문에 민가에는 귤유 보기를 독약과 같이 하고 잘 재배를 하지 아니하며 나무 있는 자도 또한 잘라버려서 관가 질책의 환을 면하였다고 한다.

위 사료로 보아 지방관이 민가의 감귤을 진상한다는 이유로 수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건의 『제주풍토기』(1628년)에서도 당시 민간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농가에도 과원이 많이 있지만 가을이 되어 결실할 무렵이면 관에서 숫자를 헤아려 문서를 만들고 그것이 익는 수확시기를 기다려 공납케 한다. 그 숫자가 줄었을 경우에는 이를 주민에게 징수하기 때문에 그 주인은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⁹⁸⁾

96) 『광해군일기』 권 10, 광해군 즉위년 11월 3일, 「柑子一年封進之數, 多至二十四運…(중략)…柑子進上, 姑減四運」.

97) 김상헌, 『남사록』, 권 3, 10월 23일 정해조.

위 사료는 가을에 결실이 익을 때 지방관들이 일반농가 과원의 숫자를 헤아려 수확시기를 기다렸다가 그 수에 맞게 공급케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주인 조차 손을 대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과원의 집주인이 따는 일이 있으면 절도죄로 몰아 전부 관에서 가져가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여 꾀나무 재배에 기피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막대한 양의 봉진에 대비하고자 조선후기 공과원을 증설하여 공과원의 감귤로 진상하게 하였다. 조선후기 공과원의 기록은 이원진의 『탐라지』를 통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가정 병술(丙戌:중종 21년, 1526)에 목사 이수동은 진현하기 위하여 다섯 방호소에 각각 과원을 설치하고 감귤나무를 옮겨 심게 하여 그곳에 있는 군사로써 지키는 것을 겸하게 하니 백성들이 매우 편안하였다. 『여지승람』에 의하면 새로 증설할 때의 과원은 제주 19곳, 정의 5곳, 대정 6곳이었는데 지금은 제주에 3곳, 정의에 2곳이 더 증설되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민가에서 가꾸는 감귤을 침해하고 책임을 지우는 폐단은 심하다고 할 수 없다. 하물며 지금 감관과 많은 직군을 차정하여 더욱더 험어진 테를 고쳐 쌓고 감귤나무를 재배하면 저절로 민가의 감귤을 침해할 염려가 없게 된다. 만약 매우 드물게 맺힌 해를 만나면 돈을 주고 사서 봉진해야 할 수에 넉넉하게 모으는 것이 마땅하다.⁹⁸⁾

위 기록으로 제주과원은 이수동 목사의 건의에 의해 5개 방호소가 세워진 이후 16세기(1530년) 『여지승람』에 새로 증설하여 제주목 19곳, 정의 5곳, 대정 6곳으로 30개소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1653년) 당시 제주에 3곳, 정의에 2곳을 더 증설하여 총 37개소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 증설할 때의 과원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민가의 감귤을 수탈하는 폐단이 있어 별도로 감독관을 임명하고 직군(直軍)¹⁰⁰⁾을 많이 배정하였으므로 특별히 잘 관리하여 재배하면 자연히 관에서 사가의 감귤을 침탈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며,

98) 이진, 『제주풍토기』, 「宮家亦多有之 而秋成結子之初 自官家摘奸 等其顆數而成籍 待熟摘取 而進供其數 苦縮則 徵於其主故 其主有同過客 不敢下手云」.

99) 이원진, 『탐라지』과원조(果園條).

100) 과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나 군사를 가리킨다.

적게 열리는 해에는 돈을 주어 사서 봉진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후 18세기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제주 과원은 42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19세기 『탐라지초본』에는 54개소로 나타나고 있다.¹⁰¹⁾

이로써 이수동 목사의 건의로 공과원이 증설되면서 점차 과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모든 과원에는 수감고·감고 등 감관 1인씩을 두어 관리 책임을 맡기고 직군(直軍) 또는 과원직(果園直)을 주민들 가운데서 뽑아서 과원을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관리 문제나 관의 침탈은 여전하였다.

공과원의 증설에 따라 공과원을 중심으로 진상굴이 재배되고 봉진되어 민가의 감귤을 징수하는 폐단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민간에서 재배하는 감귤에 대한 진공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과도한 진상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18~19세기에 걸친 광범위한 피역이 나타나게 되며 민간에서의 굴 재배 기피 현상으로 19세기 중반 이후 확장되었던 과원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감귤봉진에 따른 여러 폐단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옹원(司饗院)에서, 제주에서 진상한 감귤(甘橘)이 썩었다 하여 봉진관(封進官)을 추고(推考)하고, 가져온 사람을 다스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해로(海路)에서 순풍을 기다리느라 시일을 보낸 것이고, 썩을 걱정을 삼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여 문책하지 말라고 명하였다¹⁰²⁾

나) 정은이 사옹원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에서 각전에 진상하는 유자를 제 때에 봉하여 올려 보내지 않음으로써 절기가 늦어 태반이 썩게 만들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봉하여 올린 제주의 관리를 추고하고서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¹⁰³⁾

101) 이형상, 『남환박물』, 『탐라지초본』과원조.

102) 『숙종실록』 권 23, 숙종 17년 2월 6일, 「司饗院以濟州進上甘橘腐傷, 請推封進官, 且治陪持人. 上謂 海路候風, 費了時日, 腐傷之患, 非由不謹, 命勿問」.

103) 『승정원일기』 인조 3년 11월 19일, 「鄭蘊, 以司饗院都提調意啓曰, 濟州各殿柚子進上, 不爲趁時封進以送, 而致令節晚, 太半腐朽, 極爲駭愕. 請濟州封進官吏推考. 傳曰, 依啓」.

다) 예조에서 아뢰길, 제주목사 이희태(李喜泰)는 종묘(宗廟)·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 천신 당유자를 청귤로 대신 봉진하였습니다. 다른 과실로 봉진하는 것은 당연히 목사 이희태를 책망하여 추고하여 대신 봉진한 청귤은 사용원에 이송시키겠다고 하였다.¹⁰⁴⁾

라) 제주 감귤진상이 오늘 도착하였습니다. 종묘천신감귤이 도착하였는데 그 중 동정귤, 유감의 수가 미급합니다. 진상이 들어온 후에는 천신이 지체되어 일에 차질이 있습니다. 동정귤과 유감 진상은 원래 수 각 252개로 예조에 이송하여 종묘, 영소전, 경녕전에 내일 천신한 후 다시 들일 것을 청하였다.¹⁰⁵⁾

위 사료 가)의 내용은 바다 건너 진상물을 수송해야했기 때문에 순풍을 기다리느라 늦어 감귤이 모두 썩어버렸다는 기록으로 봉진관을 추고하려하였으나 속종은 문책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 사료 나)에서는 유자 봉진으로 유자는 9월에 다른 감귤에 비해 일찍 봉진하여야 하는데 11월에야 봉진하여 절반이 넘게 썩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제주관관을 추고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사료 다)를 보면 제주목사 이희태가 종묘, 영소전, 경녕전에 바치는 천신 당유자를 청귤로 대봉(代封)한 책임을 물어 문책하고 있다. 그리고 사료 라)에서는 천신 동정귤과 유감의 수가 미달하여 다시 미달액을 채우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특히 제주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바다가 가로 놓여 있어 꺾이 운반 도중 썩고 상하는 일이 많아 백성들에게 폐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으며 이러한 진상물 운송에 따른 폐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위 사료 가)와 같이 지체되거나 진상물을 싣은 배가 아예 전복되어 공인들이 죽는 경우까지¹⁰⁶⁾ 나타나고 있다.

104)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3월 12일, 「禮曹啓曰, 卽接濟州牧使李喜泰狀啓及膳狀, 則上年十一月朔所封醜物十九運·二十運進上及正朝陳賀箋文方物進上所載船隻, 元無到陸之事, 似由於洋中敗沒, 故宗廟·永昭殿·敬寧殿薦新唐柚子, 代以青橘, 充數封進矣. 船隻敗沒, 固非人力所容, 而莫重薦新, 終致闕封. 至於以他果代封, 尤是前所未有之事, 當該牧使李喜泰推考警責, 代封青橘, 則移送司饗院, 以爲內入之地, 何如 傳曰, 允. 以上禮曹膳錄」.

105)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12월 14일, 「司饗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柑橘進上, 今始來到, 而陪持人所供內, 宗廟薦新柑橘, 則來到, 而其中洞庭橘乳柑, 則未及入來云. 進上既到之後, 薦新遲延, 事體未安. 洞庭橘乳柑進上元數內, 各二百五十二箇, 移送禮曹, 宗廟·永昭殿·敬寧殿, 明曉薦新後, 還爲內入, 何如 傳曰, 允」.

106) 『영조실록』 권 46, 영조 13년 11월 4일, 「濟州貢柑人安萬赤等十四人, 船敗渰死, 命行恤典」.

또한 감귤은 봉진하는 것도 몹시 까다로웠다. 봉진 할 때에 짓눌러서 훼손되거나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짚단을 이용하여 싸고 나무통에 다른 물건과 함께 넣도록 했고¹⁰⁷⁾, 연산군 때는 가지에 붙어 있는 채로 올리라 하였다. 또한 철이 지난 감자와 유감을 봉진토록 하기도 하였다.¹⁰⁸⁾

이와 같이 감귤 봉진의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민가에서는 귤나무를 독약과 같이 여겨 감귤 재배를 꺼리게 되었으며 심지어 아예 뽑아버리기도 하였고 또는 나무에 끊는 물을 부어 죽여버리거나 밑둥에 불을 질러 독축을 피하는 일이 빈번하였다.¹⁰⁹⁾

또한 큰 눈이 내려 과수의 가지와 잎이 말라 버려 공·사과원이 모두 동상을 입어 진상이 곤란하거나, 귤의 맛이 나빠 진상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는 등의 자연적인 재해로 수량이 부족한 때는 조정에서 그 물품을 감량해주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면제해 주기도 하였으나 관가(官家)에서는 진상을 구실로 수없이 착취하였다.

진상용 귤을 거두어 들임에 있어서도 본래는 1운(運)이 4통(桶) 혹은 5통이었으나 1운 20통씩 거두어 백성들의 생활은 과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진상의 고통이 결국 민간 과원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원거리 수송에 따른 잦은 해난사고와 기상적인 요인이 겹쳐 등 감귤 봉진은 제주민들의 큰 부담이 되었다.

107) 『세조실록』 권 2, 세조 1년 12월 25일, 「守令畏責, 遂使美味終不入貢, 自今擇取別器盛頓, 間以他物, 不令觸破, 題標別進」.

108) 『연산군일기』 권 43, 연산군 8년 3월 11일, 「柑子, 乳柑雖已背節, 若有摘藏者封進, 在樹者連枝以進」.

109) 『영조실록』 권 67, 영조 24년 1월 10일, 「聞柑橘之貢亦有弊, 閭巷間若生此樹, 則必以湯水澆殺云, 然乎…果有此弊矣. 民家有此樹, 則自官以家主定果主, 且令摘納矣」.

V. 해산물과 약재진상의 추이

제주도는 주위가 수심 100m 내외의 광활한 대륙붕으로 발달되어 있고 수온도 온화하여 수산자원의 보고(寶庫)를 이룬다.¹¹⁰⁾ 제주도는 해조류 뿐만 아니라 어족(魚族)이 풍부하고 근해의 얕은 바다는 대부분 암반과 암초가 발달하여 양호한 패류의 서식조건을 갖추고 있다.¹¹¹⁾

또한 식물의 보고라 불리는 제주도에는 그동안 알려진 식물의 종류가 약 1,800여 종류¹¹²⁾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자생식물의 종류가 많은 것은 해안과 저지대로부터 한라산 정상부에 이르기까지 난대(暖帶), 온대(溫帶) 및 한대성(寒帶性)의 식물들이 고도별로 층상(層狀)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리적·기후적 조건으로 특산식물의 종류 또한 많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으로 해산물 진상과 약재진상이 행해졌는데 본 장에서는 월령 물목으로 2월부터 9월까지 진상하였던 해산물류와 세초 명목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바쳤던 약재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해산물 진상의 실태

옛날부터 제주에서 채취했던 패류나 해조류는 주로 식량 또는 비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전복, 소라, 미역 등은 종교적 제사품으로 혹은 왕실진상품으로

110) 제주도에 알려진 해조류인 바다식물은 200여 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뚝가사리, 미역, 감태, 청각 등이며, 패류는 180여종이 서식하며 전복, 오분자기, 보말, 소라 등이 대표적인 패류의 종류로 들 수 있다. 또한 어류는 종류가 풍부한 편이며 대표적인 어류는 108종에 달한다. 국립제주박물관 편, 『제주의 역사와 문화』(국립제주박물관, 2001), 14~17쪽.

111) 제주도의 연안은 온대와 아열대적 성격을 띠며 쓰시마난류와 황해저층냉수, 해안의 용천수 등이 유입되어 특이한 해양환경을 보인다. 따라서 회유성 및 정착성 어족이 풍부하고 발달된 암반과 암초로 패류의 좋은 서식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국립제주박물관 편, 『제주의 역사와 문화』(위의 책, 2001).

112) 자생식물의 종류가 제주도보다 면적이 넓은 설악산이 950종류, 지리산이 820종류에 비하면 제주도는 월등하게 많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김문홍, 『제주도 육상식물의 연구와 장래의 문제-분류 및 식생연구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4집(제주도연구회, 1987).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해산물에 관한 기록으로는 백제 문주왕 2년(476)에 “사자가 내도하여 조공케 하고 제주를 백제의 속국으로 만들었다. 이때 탐라국에서는 진상품 중에 채취한 전복과 해조류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5세기를 전후하여 탐라에서는 전복과 해조류가 채취되었으며 조공으로 바쳤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임유간이 진주를 탐라에서 캐다가 얻지 못하매 이에 백성이 소장한 100여매를 취하여 원에 돌아갔다”¹¹³⁾ 라는 기록을 통해 탐라에서 진주를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 시대 어물과 육류의 진상은 포획이 어려웠기 때문에 중요시되었고 그 품목 또한 많았다. 특히 어물류는 건물이 아닌 생물 진상의 경우 신선도 유지 때문에 부담이 무거웠다. 조선 후기에는 해산물류 중 전복과 오징어, 미역 혹은 미역귀 등이 진상으로 바쳐졌는데 특히 제주에서 대표적으로 진상되었던 해산물은 전복과 오징어였다. 매해 2월부터 9월까지는 추복과 조복, 인복 등과 같은 전복류를 바쳤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오징어를 정기적으로 진상으로 바쳐졌다.

조선후기 해산물 봉진과 관련된 기록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표 10 > 조선후기 해산물 봉진의 현황

| 시 기 | 내 용 |
|---------------|-----------------------------|
| 효종 7년 7월 26일 | 제주에서 오징어 80첩, 추복 790첩 진상 |
| 현종 즉위년 7월 16일 | 제주에서 7월초 오징어 진상 |
| 현종 2년 7월 26일 | 생복 등의 진상물 수가 모자란 것으로 봉진관 추고 |
| 숙종 38년 6월 14일 | 제주에서 5월초에 추복 230첩 바침 |
| 숙종 40년 4월 21일 | 제주에서 3월에 추복 20첩 바침 |
| 숙종 41년 9월 4일 | 제주 백성들이 화복(花鰻)과 인복(引鰻)을 바침 |
| 숙종 42년 5월 6일 | 제주에서 인복 80주지(注之) 바침 |
| 숙종 42년 5월 10일 | 회전복을 구할 수 없어 처분해 줄 것을 청함 |
| 숙종 43년 7월 27일 | 부패한 오징어를 진상한 제주목사를 추고 |

113) 『고려사』 권 28, 세가 충렬왕 2년 6월, 「林惟幹採珠于耽羅 不得 及取民所藏百餘枚還元」.

| | |
|---------------|-------------------------------|
| 경종 원년 10월 14일 | 천신해야할 건오징어 등을 봉진하지 않아 제주목사 추고 |
| 영조 12년 7월 27일 | 제주목에서 6월초 추복, 오징어 진상 |
| 영조 17년 6월 10일 | 제주목에서 5월초 추복, 인복을 바침 |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 표 10 >에서는 해산물 중에서도 주로 전복과 오징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체로 4월~9월 사이에 봉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옹원에서 말하길, 제주목에서 4월초 진상하여 오늘 도착하였으나 그 물품을 확인해 보니 대전에 봉진하는 인복 80주지가 모두 부패하였습니다. 당연히 봉진한 관리를 추고하여 치죄(治罪)할 것을 청한다고 하니, 윤허하였다.¹¹⁴⁾

나) 제주 별견 어사(濟州別遣御史) 황귀하(黃龜河)가 장계(狀啓)하여 회전복(灰全鰓)을 해마다 봉진(封進)하는 어려움을 말하니, 임금이 우선 감면하라고 특별히 명하고 이어서 본도(本島)에서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모두 3분의 2를 줄이라고 명하였다.¹¹⁵⁾

다) 제주목에서 6월초 진상하여 오늘 도착하였다. 물품을 보니 대왕대비전에 봉진하는 추복의 원래 수량 120첩 중 부패한것이 90첩, 오징어 20첩 중에 6첩은 생략. 대전에 진상하는 추복은 54첩 중 40첩이 상하였고 인복은 54주지 중 3주지가 상하였습니다. 오징어는 27첩 중 15첩이 생략. 중궁전, 세자궁에 봉하는 것은 바다에 가라앉아 면하기 어렵다. 이는 비록 해외에서 진상하여 상하는 것이지만 마땅히 제주목사를 치죄하겠습니다.¹¹⁶⁾

114) 『승정원일기』 숙종 42년 5월 6일, 「司饗院啓曰, 濟州牧四月朔別進上, 今日來到, 本院, 看品捧上, 則大殿所封引鰓八十注之, 綜頭舉爲腐傷, 當該封進官推考, 陪持人, 亦不無不善護來之罪, 自本院, 治罪, 何如 傳曰, 允」.

115) 『숙종실록』 권 57, 숙종 42년 5월 10일, 「濟州別遣御史黃龜河狀言, 灰全鰓連年封進之難, 上命特爲姑減, 仍命本島進上物種, 並減三分之二」.

116)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7월 27일, 「李壽沆, 以司饗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牧六月朔進上, 今日來到, 本院看品捧上, 則大王大妃殿, 所封槌鰓, 元數一百二十貼內, 腐傷九十貼, 烏賊魚二十貼內, 六貼生綠. 大殿所封槌鰓, 五十四貼內, 腐傷四十貼, 長引鰓五十四注之內, 腐傷三注之. 烏賊魚二十七貼內, 生綠十五貼. 中宮殿·世子宮所封, 亦不免間或有水沈生綠處. 自前海外進上, 雖有所傷之物, 曾無退送之例, 不得已捧入, 而莫重享上之物, 有所未盡, 其在事體, 不可無警責之道, 當該封官濟州牧使金鎔推考, 陪持人, 亦不無不善護來之罪, 自本

라) 제주목에서 5월초 진상품이 이제 도착하였습니다. 대왕대비전에 진상하는 추복 160첩, 대전에 진상하는 추복 80첩, 인복 54주지가 전부 색이 변하였고 상했습니다. … 죄를 다스리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¹¹⁷⁾

위 사료 가)의 내용은 제주에서 4월령으로 봉진한 인복이 5월에 도착하였는데 모두 찍어 봉진한 관리에게 죄를 묻겠다는 내용이다. 사료 나)에서는 제주에서 진상하던 회전복을 해마다 봉진하기 어렵다하여 임금이 특별히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이후부터는 회전복 진상에서 벗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료 다)에서는 제주에서 6월 초에 진상한 추복과 오징어, 인복 등이 7월에 도착하였는데 이 또한 많이 상하여 제주목사를 문책하겠다는 내용이고 사료 라)에서도 5월에 진상한 추복과 인복이 색이 변하여 치죄(治罪)하겠다는 내용이다. 위 사료들로 보아 당시 해산물 봉진에서의 문제점은 대부분 배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진상물 수송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료로는 조선후기 해산물 봉진을 얼마정도 바쳤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17세기 초 김상헌의 『남사록』의 기록에 조선후기 해산물 봉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추복이 3,030첩, 조복이 230첩, 인복이 910첩, 오징어가 630첩으로 진상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¹¹⁸⁾

이후의 기록을 통해 조선후기 해산물 진상의 기록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11 > 해산물의 진상 물목과 수량

(단위 : 첩)

| 시 기 | 내 역 | 합 계 |
|---------|---------------------------------------|----------|
| 17세기 중반 | 2월령 추복 265첩, 조복 265첩, 인복 95속 | 추복 5,346 |
| | 3월령 추복 240첩, 인복 85속, 미역 40묵, 미역귀 2석5두 | 조복 265 |
| | 4, 5월령 추복 각 760첩, 인복 각 170속 | 인복 1,115 |

院治罪, 何如 傳曰, 允」.

117)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6월 10일, 「司饗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牧五月朔別進上, 來到本院, 開閣看品, 則大王大妃殿所封搥鰓一百六十貼, 大殿所封搥鰓八十貼, 引鰓五十四注之全體色變, 舉皆傷黑, 在前海外進上, 雖或有所傷, 亦無退送之例, 故不得已捧入. 而莫重享上之物, 當此霖熱之節, 不善封裹, 至於致傷之境, 誠爲未安, 不可無警責之道. 當該牧使, 從重推考, 陪持人, 亦不無不善護來之罪, 自本院治罪, 何如 傳曰, 允」.

118) 김상헌, 『남사록』, 권 1, 9월 22일 병진조.

| | | |
|---------|---|--|
| | 6월령 추북 1,108첩, 오징어 215첩, 인북 170속 7월령 추북 680첩, 오징어 430첩, 인북 170속 8월령 추북 1,108, 인북 170속, 오징어 258첩 9월령 추북 425첩, 오징어 172첩, 인북 85속 | 오징어 1,075 총 7,373 |
| 18세기 초반 | 각종 전북 9,000여첩, 오징어 700여첩 | 총 9,700여첩 |
| 18세기 후반 | 2월령 추북 113첩, 조북 113첩, 인북 30주지, 3월령 추북 113첩, 인북 27주지 4월령 추북 245첩, 인북 54주지 5월령 추북 245첩, 인북 54주지 6월령 추북 190첩, 인북 54주지, 오적어 73첩 7월령 추북 189첩, 인북 54주지, 오적어 139첩 8월령 추북 189첩, 인북 54주지, 오적어 88첩 9월령 추북 139첩, 인북 27주지, 오적어 64첩 | 추북 1,423 조북 113 인북 354 오징어 364 총 2,254 |
| 19세기 전반 | 2월령 추북 107첩, 조북 107첩, 인북 32주지, 3월령 추북 107첩, 인북 29주지 4월령 추북 235첩, 인북 58주지 5월령 추북 235첩, 인북 58주지 6월령 추북 178첩, 인북 57주지, 오적어 69첩 7월령 추북 177첩, 인북 57주지, 오적어 135첩 8월령 추북 176첩, 인북 57주지, 오적어 85첩 9월령 추북 132첩, 인북 29주지, 오적어 60첩 | 추북 1,347 조북 107 인북 377 오징어 349 총 2,180 |
| 19세기 중반 | 2월령 추북 131첩, 조북 131첩, 인북 32주지 3월령 추북 131첩, 조북 29주지 4월령 추북 284첩, 인북 58주지 5월령 추북 284첩, 인북 58주지 6월령 오징어 83첩, 추북 216첩, 인북 57주지 7월령 오징어 159첩, 추북 215첩, 인북 57주지 8월령 오징어 99첩, 추북 214첩, 인북 57주지 9월령 오징어 73첩, 추북 155첩, 인북 29주지 | 추북 1,630 조북 131 인북 377 오징어 414 총 2,552 |

※ 이원진 『탐라지』, 이형상 『남환박물·탐라순력도』,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사례』, 『탐영사례』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표 11〉 과 같이 해산물은 2월~9월까지 월별로 바쳐졌는데 17세기 중반에는 추북 5,346첩, 조북 265첩, 인북 1,115첩, 오징어 1,075첩이 진상되었고, 18세기 초반에는 전북 9,000여첩, 오징어 700첩을 바쳤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는 추북이 1,423첩, 조북 113첩, 인북 354첩, 오징어는 364첩을 바쳤다. 19세기 초반은 추북이 1,347첩, 조북 107첩, 인북 377첩, 오징어 349첩을 바친데 비

해 19세기 후반은 추복 1,630첩, 조복 131첩, 인복 377첩, 오징어 414첩을 바쳤음을 알 수 있다. 총 수량을 비교해보면 17세기 초 5,000여첩을 진상하였지만 17세기 중반 한해에 7,000여첩을 넘는 수량을 바쳤다. 18세기 초반에는 9,700여첩으로 2,000여첩이 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들어와서 전 시기보다 절반이 훨씬 넘는 액수로 줄어들어 2,000여첩을 바쳤는데 이후에는 대체로 2,000여첩~2,500여첩 정도의 수량이 바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해산물의 진상은 전복 및 어물 등을 채취하여 진상의 역을 담당하였던 사람을 뜻하는 포작인(鮑作人)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진상뿐만 아니라 관에서 쓰이는 해산물도 담당하여 관리들의 사리를 위하여 쓰이는 것까지 부담하였다. 이에 포작인들이 바치는 수량은 많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포작인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가) 전일에 목사들이 해적(海賊)의 상황을 정탐한다는 구실로 군관을 내보내 많은 포작인(鮑作人)을 인솔하고 떠나 오랫동안 도서(島嶼)에 머물며 생전복을 따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진상만을 위해서가 아니며 사사로이 쓰여지는 것들도 많습니다.¹¹⁹⁾

나) 제주 풍속은 많이 처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작배는 홀아비로 살다가 늙어 죽는 자가 많이 있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본주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의 공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 그 몇 곱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일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익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나 징렴(徵歛) 공응(供應)은 전보다 줄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그 몸은 오래 바다에 있고 그 아내는 오래 옥 속에 있어 원한을 품고 고통을 견디는 모양은 말로 다 이를 수 없다. 이런 때문에 이웃에 사는 홀어미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빌어먹다가 스스로 죽을 지언정 포작인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¹²⁰⁾

다) 본도(本島)의 세 고을은 가난하여 의지할 바가 없고 역(役)이 다른 곳의 배나 되

119) 『광해군일기』 권 10, 광해군 즉위년 11월 3일, 「且前日牧使等, 托稱偵探海賊, 差遣軍官, 多率鮑作, 久留島嶼, 摘取生鮑, 非但爲其進上, 而私用亦多」.

120) 김상헌, 『남사록』, 권 1, 9월 22일, 「然州俗多並畜妻妾 然浦作輩多然鰥居而老死者 問其故 本州所貢鮑魚之數極廣 官吏之憑公營私 又且倍從浦作輩 不堪其役 流亡溺死 十存二三 而徵歛供應 不減於舊 以此其身則長在海中 其妻則長在獄中 含耐苦之狀 不可勝言 故雖有隣居妻 寧願乞食自終 不欲爲浦作人妻也云」.

어, 심지어는 부모(父母)를 팔고 처자(妻子)를 팔며, 자기 자신이 품을 살고 동생을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팔린 자가 모두 58명이 되었습니다. … 이른바 어호(漁戶)로서 배를 부리는 일을 겸하는 격군(格軍)의 아내는 잠녀(潛女)라고 일컫는데, 1년 동안 관아에 바치는 것이 포작(鮑作)은 20필(疋)을 밑돌지 않으며, 잠녀(潛女)도 또한 7, 8필에 이르게 되니, 한 가족 안에서 부부(夫婦)가 바치는 바가 거의 30여 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복, 각종 오징어, 분곽(粉藿)등을 따는 역(役)이 모두 이로부터 나와서 경영되고, 본고을[本官]의 장수와 병졸(兵卒)에 대한 지공(支供)과 공사(公私)의 수응(酬應)은 또한 이 숫자 이외에 있으니, 만약 별도로 변통(變通)하지 않는다면 무리들이 수년 동안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팔린 자를 속환(贖還)하는 일을 시행하도록 허가하되, 이어서 금령(禁令)을 엄하게 하여 폐습(弊習)을 근절시키소서. 진상(進上)에 대가(代價)를 주는 일은, 매년 3백 석으로 삼으면 실로 잇대기 어려울 염려가 있으니, 3년 동안 기한하여 나누어 주어서 본진(本錢)은 보존하고 이자(利子)만 취하게 하여, 영구히 역(役)을 보충하게 하소서¹²¹⁾

위 사료 가)에서는 제주에서 바치는 전복의 수가 적지 않았으며 더구나 관리들이 사사로이 바쳐 그 수량은 더욱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료 나)에서는 전복 진상의 수량이 많아 그 역을 견디지 못해 떠돌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도 여전히 진상의 부담은 무거웠다고 한다. 더구나 처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 과부라도 포작의 처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다)에서는 1년 동안 포작인이 20필을 잠녀(潛女)는 7, 8필을 바친다는 내용으로 한 가족 안에서 부부가 바치는 양이 30여필에 이르게 되어 포작인과 잠녀의 고통이 컸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전복, 오징어, 분곽 등을 따는 역과 본 고을의 장수, 병졸에 대한 지공까지 따로 마련해야 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위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포작인과 함께 잠녀 또한 해산물 진상의 고통이 있었는데 잠녀는 관아에서

121) 『숙종실록』 권 37, 숙종 28년 7월 12일, 「本島三邑, 貧殘無依, 役倍他處, 甚至賣父母鬻妻子, 雇當身賣同生之境, 賣鬻者都合爲五十八名. … 所謂漁戶兼行船格妻, 稱潛女, 一年納官者, 浦作不下二十疋, 潛女亦至七八疋, 一家內夫婦所納, 幾至三十餘疋, 而搥鰓、各種烏賊魚、粉藿等役, 皆自此出營, 本官將士支供及公私酬應賣鬻者贖還事許施, … 而仍嚴禁令, 以絕弊習. 進上給價事, 以爲每年三百石, 實有難繼之憂, 限三年劃給, 俾令存本取利, 永久補役」.

작성한 잠녀안(潛女案)에 의해서 그들 채취물의 일부를 진상용, 관아용 명목으로 상납해야 했다. 이에 그 액수가 1년 7, 8필에 달하는 고역이었으며 더구나 이속들의 부정이 개입할 때에는 그들의 1년 작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¹²²⁾

이러한 진상용 추복과 인복, 관아용 어복 조달을 담당한 포작인은 그 진상액의 많음과 관리들의 빙공영사(憑公營私)로 말미암아 목자 못지 않은 고역을 치러야 했다. 그래서 포작은 그들에게 씌어진 과중한 역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갖 피역행위를 도모하였다. 그렇지만 피역을 하지 못한 포작이 피역자의 몫까지 모두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컸었다.¹²³⁾

더구나 조선 건국 초에는 진상물 관비의 원칙이 있었는데 세종 7년(1425)의 규정에 따라서 연해 여러 읍에서 진상물선(進上物膳)은 수군을 사역해서 채취되고 정비되었다. 수군사역은 세조 2년(1456)에 금지되어 인리(人吏)로 구성된 진상물선군(進上物膳軍)을 새로 정했다고 한다.¹²⁴⁾ 이와 같이 진상물은 원칙적으로 관부에서 정비하고 또한 상번군리(上番軍吏)·정역호로 하여금 정비, 상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아 일반민호에도 그 부담이 전가되었다. 또한 제주관에서 바치는 전복의 수효가 많았고 관리들이 공을 청탁하여 사리를 폐함에 따라 바쳐지는 많은 수량을 포작들이 채취해야 했기 때문에 징수량은 증대되었고 전복채취의 역은 포작 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민호에게도 부과하게 되었다. 당시 전복채취로 고통을 받았던 제주민과 관련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가) 전복을 캐는 대해 하문하고 전교하기를, 옛 사람이 말하기를, ‘소반의 밥 낱알 하나하나가 모두 신고(辛苦)의 결집인줄 누가 알라?’ 하였는데, 소반의 전복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¹²⁵⁾

122) 권인혁, 「조선후기 지방관아 재정의 운영상황-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99~100쪽.

123) 권인혁·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188쪽.

124) 이것은 정역호로 다른 역은 면제되었다. 정역호(定役戶) 또는 정속호(定屬戶)라고도 한다. 국정운영에 필요상 예속관계 아래서 세직세업(世職世業)의 강요를 받은 민호로 대부분은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신역으로 정해진 직무·생산노무에 종사했다. 나가모리 미쯔노부(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진상물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23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139~144쪽.

나)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진상(進上)하는 전복(鮑魚)이 날이 더우면 썩어서 입에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자, 대답하기를, 이는 기강이 해이한 탓이니, 엄히 신칙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부(海夫)에게 폐해가 됨이 없겠는가? 나는 바다 속의 전복 하나하나가 다 대단히 고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내(大內)에서 자전(慈殿)께 잔치를 베풀 때와 의소(懿昭)의 입묘(入廟) 때에 전복을 쓰려 하였으나,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하였다.¹²⁵⁾

다) 매월 바치는 물선(物膳) 중에 추복(追鮑)·인복(引鮑)·오적어(烏賊魚) 등의 종류는 절대로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한 죄에 구애받지 말고 이에 준하여 세액을 감하고 수효도 즉시 줄여 봉진(封進)하여 원근을 구별하지 않고 백성을 한결같이 여기는 조정의 은택을 입게 하라고 하였다.¹²⁶⁾

위 사료 가)와 나)는 전복의 구함에 고생스러움에 대한 내용으로 특히 사료 나)에서는 날씨가 전복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칙하려 하였으나 전복 채취하는 자의 고생스러움과 폐해로 만료하고 또한 잔치때에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료 다)에서는 해산물의 봉진을 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세종 25년(1443) 기조 목사가 바닷가를 거닐다가 연약한 여인들이 만나체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조업(操業)하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했으며, 엄동설환에도 불구하고 채취한 해산물이 자기의 식탁위에 날마다 오르고 있는 부식임을 알게 되자 기조 목사는 재임중에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수령을 비롯한 지방관리들이 진상제도를 사리추구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 징수량은 증대되어 제주민의 고통은 매우 컸었다.

125) 『영조실록』 권 67, 영조 24년 1월 10일, 「下詢採鮑之弊,古人云, 誰知盤中粟, 粒粒皆辛苦 盤中鮑, 亦然矣」.

126) 『영조실록』 권 81, 영조 30년 윤 4월 19일, 「上謂筵臣曰 進上鮑魚, 日熱則腐, 不堪近口矣. 對曰 此是紀綱解弛之致, 不可不嚴飭. 上曰 能無有弊於海夫乎 予則謂海中鮑, 箇箇皆辛苦. 故自內設酌於慈殿時, 及懿昭入廟時欲用鮑魚, 而以有弊止之也」.

127) 『정조실록』 권 26, 정조 12년 9월 30일, 「每朔物膳追鮑, 引鮑, 烏賊魚等種, 切勿以擅便爲拘, 準此減稅, 數爰須卽減封, 俾朝家一視之澤, 無遐邇之別」.

2. 약재진상의 실태

향약(鄉藥)은 그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고장에서 생산되는 약재로서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향토 의학이다. 동양의 의학이 고구려 평원왕(平原王) 3년(561)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이래로 고려시대에는 자주적인 의학의 발전을 가져와 소위 향약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하였다.¹²⁸⁾ 고려의 향약 정책은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답습하여 태조 6년(1397)에는 『향약재생집성방』을 편집케 하였다.

조선왕조는 고려조의 의료제도를 답습하여 선초에 전의감(典醫監)¹²⁹⁾, 혜민국(惠民局)¹³⁰⁾, 제생원(濟生院)¹³¹⁾, 내약방(內藥房)¹³²⁾,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¹³³⁾ 등 중앙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에도 의료기관을 두어 군현에 의생(醫生), 여의(女醫), 채약부(採藥夫) 및 약포시설을 두었다. 조선시대의 의료기관에서는 중국산 약재인 당약과 향약을 사용하였는데 향약재는 지방각관의 공물로서 상납될 뿐 아니라 진상으로서도 상납되었다. 공물약재는 지방 각 군현에서 대민의료기관인 전의감·혜민국·제생원에 상납하는 것이나 진상약재는 궁중의료를 전담하는 내약방에 상납하는 것이며 그 봉진관(封進官)은 감영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진상약재는 공안(貢案)에 수록되어 월령으로서 그 품목과 수량이 정해져 있다.¹³⁴⁾

128) 고려시대에 『향약구급방』, 『향약혜민경험방』, 『향약고방』 등의 의학관련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안덕균, 『세종시대의 보건위생』(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129) 전의감은 태조가 왕위에 오른 뒤 고려 말의 전의시(典醫寺)를 전의감으로 고친 것이며, 주로 궁중의 약이나 하사용 약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왕실과 고급 관리들의 진료, 그리고 의약품의 관리와 재배, 인사 관리까지 관장하였다.

130) 혜민국은 향약재의 수납과 백성의 존비귀천을 가리지 않고 치료하는 기관으로 서민 치료와 의학교육을 담당하였다.

131) 제생원은 태조때 신설되었으며 지방의료기관의 관리 및 향약재의 수납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일반 민중의 질병을 구료하였으며 구호사업에도 참여하였다.

132) 태조 원년(1392)년에 중앙의 의료기관으로 내약방이 있었는데 왕실의 내복약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약방은 초기에 전의감에 소속되어 왕이 복용하는 약을 조제하는 일을 전담하는 기관이었으나, 세종 25년(1443)에 독립하여 약방이라고 부르고 그 관원은 내의원으로 개칭되었다.

133) 동서대비원은 조선건국 초기에 설치되었으며 일반 구호사업에 관여하는 한편,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도 종사하였던 기관이다. 즉 동서대비원은 도성내의 무의탁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었으며 태종 14년(1414)에 활인원으로 개칭되었다가 세조 12년(1466)에 활인서로 다시 개칭되었다.

134) 김옥근, 『조선왕조 제정사 연구 I-지세편-』(일조각, 1984), 18~19쪽.

이처럼 조선왕조는 약재 진상을 위해 각 지방관에 의원을 설치하였고, 의생을 두어 의약에 관한 일을 맡겼다. 그리고 약재 채배를 위한 원포를 설치하였다. 특히 약재의 채취와 조합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역호로 하여 다른 잡역을 면제하고, 부자가 이어받는 세습제로 하였다. 즉 원칙적으로 일반민호에는 부담이 미치지 않도록 되었던 것이다.

제주에는 현종 13년(1672)에 의국을 설치하고 현종 경자년(庚子年) 약국을 설치하였다. 약국은 우련당 남쪽에 있었으며, 감관 2명을 두었는데 그 중 1인은 심약(審藥)¹³⁵을 겸직하였다. 의생은 14명이었으며 약한 20명이었다. 의생은 제주도 안에서 자급되지 못하는 약재들을 다른 지역에서 구하는 임무에도 동원되었다. 약한(藥漢)은 진상할 약을 캐어 바쳤으며 제주영에서 사용하는 구급용 약을 채취하였다.

약포(藥圃)는 신과원 북쪽에 설치하여 여러 가지 약재를 채배하면서 산과 들, 바다와 못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월령에 고려하면서 채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약재는 매해 12월에 세초진상이라는 명목으로 봉진되었는데 다음 세종 때의 지방약재 통계표를 보면 제주의 약재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목-진피(陳皮)·마뿌리[山藥]·석골풀[石]·초골풀[草]·소태나무열매[川練子]·구리대뿌리[白芷]·팔각(八角)·영릉향(零陵香)·오배자(五倍子)·치자·향부자(香附子)·모과·뿔미나리[柴胡]·푸른굴껍질[淸皮]·백변두(白扁頭)·바곳[草烏頭]·엄나무껍질[海東皮]·후박(厚朴)·오징어뼈·두충(杜沖)·순비기나무열매[蔓荊子]·석결명(石決明)·끼무릇뿌리[반하]·누른국화[黃菊]·녹용·박상(舶上)·회향(茴香)·탱자껍데기[枳殼]다.¹³⁶

정의현-묵은굴껍질[陳皮]·마뿌리[山藥]·석골풀[石斛]·구리대뿌리[白芷]·영릉향(零陵香)·향부자(香附子)·탱자껍데기[枳殼]·푸른굴껍데기[靑皮]·엄나무껍질[海東皮]·후박(厚朴)·두충(杜沖)·치자(梔子)·끼무릇뿌리[半夏]·녹용이다.¹³⁷

135) 심약(審藥)은 조선조 때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감사(監査)하기 위하여 각 도에 파견하던 종9품 벼슬을 말한다.

136) 『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전라도/제주목, 「陳皮, 山藥, 石斛, 草藟, 川練子, 白芷, 八角, 零陵香, 五倍子, 梔子, 香附子, 木瓜, 柴胡, 靑皮, 白扁豆, 草烏頭, 海東皮, 厚朴, 烏魚骨, 杜沖, 蔓荊子, 石決明, 半夏, 黃菊, 鹿茸, 舶上, 茴香, 枳殼」.

137) 『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전라도/제주목/정의현, 「陳皮, 山藥, 石斛, 白芷, 零陵香, 香附子, 枳實, 靑皮, 海東皮, 厚朴, 杜沖, 梔子, 半夏, 鹿茸」.

대정현-후박(厚朴)·탱자[枳實]·석골풀[石]·팔각(八角)·두충(杜沖)·끼무릇뿌리[半夏]·치자(梔子)·향부자(香附子)·푸른굴껍질[靑皮]·묵은굴껍질[陳皮]·엄나무껍질[海東皮]·영릉향(零陵香)이다.¹³⁸⁾

위 기록으로 제주에 생산되는 약재를 알 수 있다. 제주목은 28종류, 정의현 14종류, 대정현 12종류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나는 다른 지방과 약재 분포를 비교해보면 다른 지방 비하여 그 종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지방 중에 약재 분포가 많이 나타나는 몇 곳을 가려 다음 < 표 12 >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표 12 > 『세종실록지리지』로 본 전국 약재 분포의 추이

(단위 : 종)

| 지 역 | | 약재종류수 | 지 역 | | 약재종류수 |
|-------|--------|-------|-------|--------|-------|
| 경 기 도 | 광주목 | 5 | 황 해 도 | 서흥도호부 | 8 |
| | 충주목 | 3 | | 곡산군 | 11 |
| 충 청 도 | 단양군 | 9 | | 해주목 | 8 |
| | 옥천군 | 7 | | 평 안 도 | 철산군 |
| 경 상 도 | 경주부 | 6 | 함 길 도 | 영흥대도호부 | 22 |
| | 울산군 | 6 | | 나주목 | 8 |
| | 동래현 | 6 | | 남원도호부 | 15 |
| | 순흥도호부 | 7 | | 장수현 | 10 |
| 강 원 도 | 강릉대도호부 | 14 | 전 라 도 | 장흥도호부 | 10 |
| | 양양도호부 | 13 | | 제주목 | 28 |
| | 정선군 | 14 | | 정의현 | 14 |
| | 희양도호부 | 17 | | 대정현 | 12 |

※ 안덕군, 『세종시대의 보건위생』(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146~219쪽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표 12> 를 보면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지방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수가 보통 15개 미만인데 비해 제주도는 제주목에만 28곳으로 기록되어 있어 다른 지방에 비하여 종류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약재진상은 채취하는 시기와 진상하는 방법이 있어 이에 맞추어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138) 『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전라도/제주목/대정현, 「厚朴, 枳實, 石斛, 八角, 杜沖, 半夏, 梔子, 香附子, 靑皮, 陳皮, 海東皮, 零陵香」.

제주에서 생산되는 약재로써 여름에 채취(採取)한 것을 만약 더운 때에 바다를 건너게 하면 반드시 곰팡이가 쓸 것입니다. 방문(方文)대로 철에 따라 채취하되, 봄·가을과 겨울에 채취한 것은 건조(乾燥)되는 대로 곧 진상하고, 여름에 채취한 것은 봉(封)해서 낱자를 적고 불에 쪄었다가, 장마가 그친 뒤를 기다려서 진상하도록 청함였다.¹³⁹⁾

위 사료를 통해 약재류를 철에 따라 채취하도록 하였으며, 봄과 가을, 겨울에 채취한 것은 건조시켜서 곧바로 진상하였고, 여름에 채취한 것은 봉해서 낱자를 적고 불에 쪄었다가 장마가 그친 뒤를 기다려서 진상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제주에서 바쳤던 많은 종류의 약재류는 12월 그믐에 바치는 세초진상품목으로 확정되어 왔는데 조선후기 제주에서 진상으로 바쳤던 약재의 종류와 수량을 정리해 보면 다음 < 표 13 >과 같다.

< 표 13 > 조선후기 약재진상의 종류와 수량

| 시 기 | 내 역 | 합 계 |
|---------|---|---|
| 17세기 중반 | 영진상도계 백랍 24편 4월령, 5월령 표고버섯 각 2석 1두 5승 8월령 비자 14승, 반하 31근, 석결명 2근, 엄나무껍질 6근 9월령 유안식향 33근 12월령 세초진상 백랍 24편, 새 표고버섯 1석 2승, 궤자의 장포·원포 각 32조, 노루가죽 11령, 치자 160근, 이른 미역 132첩, 진피 48근, 청피 30근, 꿀씨 7냥, 꿀잎 6근, 기각 22근, 향부자 78근, 무환자 8냥, 석곡 11냥, 기실 6근, 연근 1근 4냥, 연실 4냥, 후박 32근, 목환자 4,400(5년에 한번 봉진) | 백랍 90편 표고 5석 2두 12승 치자 160근 진피 48근 청피 30근 향부자 78근 꿀핵 7냥 무환자 8냥 석곡 11냥 기실 6근 후박 32근 |
| 18세기 초반 | 각종 약재 470여근 | 470여근 |
| 18세기 후반 | 4월령 표고 12두 8월령 비자 12두 | 백랍 96편 표고 16두 |

139) 『세종실록』 권 29, 세종 7년 7월 11일, 「濟州所産藥材, 若夏月所採則溽熱過海, 必致着霉. 請依方隨月採取, 春及秋冬所採乾曬, 隨即進上, 夏月所採, 題封點火, 待霾雨後進上」.

| | | |
|---------|--|--|
| | 9월령 안식향 30근, 반하 23근, 해동피 5근, 석결명 1근 12월령 표고 4두, 백랍 24편, 목환자 4,000개, 치자 112개, 켈자장피(麋子獐皮) 10령, 진피 55근, 청피 27근, 굴핵 4냥, 향부자 70근, 비실 2근, 무환자 8냥, 석곡 8냥, 지각 20근, 동근(棟斤) 2근 2냥, 지실 5근, 굴엽 5근, 동실(棟實) 2냥, 후박 30근 | 치자 145근 진피 55근 청피 27근 향부자 70근 굴핵 4냥 무환자 8냥 석곡 8냥 기실 5근 후박 30근 |
| 19세기 전반 | 도입진상 백랍 24편 4월령 표고 12두 8월령 비자 15두, 반하 25근, 석결명 2근, 해동피 6근 12월령 세초진상 백랍 24편, 신표고 4두 8근, 치자 116근, 켈자장피 11령, 진피 48근, 청피 30근, 향부자 70근, 굴핵 7냥, 무환자 12냥, 비실(樞實) 3근, 석곡 11두, 지실 7근, 후박 32근, 목환자 4,400(5년에 한번 봉진) | 백랍 96편 표고 16두8승 치자 149근 진피 48근 청피 30근 향부자 70근 굴핵 7냥 무환자 12냥 석곡 11냥 기실 7근 후박 32근 |
| 19세기 중반 | 도입진상 백랍 24편 4월령 표고 14두 5승 8월령 비자 18두 5승, 반하 25근, 석결명 2근, 해동피 6근 9월령 안식향 32근, 12월령 세초진상 백랍 24편, 신표고 5두 9승, 치자 116근, 켈자장피 11령, 진피 48근, 청피 30근, 향부자 78근, 굴핵 7냥, 무환자 12냥, 비실 3근, 석곡 11냥, 기실 6근, 후박 32근, 동근 1근 4량, 지곡 21근, 동실 4량, 굴엽 6근, 목환자 4,400(5년에 한번 봉진) | 백랍 96편 표고 19두14승 치자 116근 진피 48근 청피 30근 향부자 78근 굴핵 7냥 무환자 12냥 석곡 11냥 기실 6근 후박 32근 |

※ 이원진 『탐라지』, 이형상 『남환박물·탐라순력도』,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사례』, 『탐영사례』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 표 13 >을 보아 제주에서는 많은 종류의 약재를 봉진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백랍, 표고, 치자, 진피, 청피, 향부자, 무환자, 석곡, 지실, 후박이 진상으로 많이 바쳤음을 볼 수 있다.

약재진상은 세초(歲抄)라 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바치지만 표고는 매년 4월

과 12월에 진상하였다. <표 13> 을 보면 조선후기 백랍은 17세기 중반 90편을 바쳤으나 18세기 후반부터는 약간 증가한 96편을 진상으로 바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고는 17세기 중반 5석 2두 12승을 바쳤으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는 16두 정도 바쳤으며, 19세기 후반에는 약간 증가한 19두를 바쳤다.

치자의 진상수량은 110근에서 160여근 사이로 진상되었다. 진피와 청피의 수량변화는 감귤진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변화로 볼 수 있겠으며 향부자는 17세기 초반 78근을 바쳤으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70근을 바쳤으나 19세기 중반에는 다시 78근을 바쳤다. 무환자는 18세기 후반까지 8냥을 바친것에 비해 19세기부터 12냥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석곡, 기실, 후박, 영릉향, 석결명, 반하 등 많은 종류의 약재류가 진상되었으며 시대별로 수량의 차이가 약간씩 나타나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양으로 바쳐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3>과 같이 약재진상은 이제껏 살펴보았던 말이나 굴, 해산물과는 달리 수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무리없이 이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약재진상에도 많은 폐단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동지사 유명천(柳命天)이 아뢰기를, 제주에서 진피 등 약간 종만 상납하고 있는데 이때에 한번만 청대(請對)하고 그 뒤로는 별로 청대하여 출납할 일이 없는데도 월령(月令) 감찰이 양의사에 폐가 됨이 심히 많자 공물주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약재를 출납할 때에는 청대하는 일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이제는 공물주인들이 값을 받아 약을 조비(措備)하여 자기 집에 놔두고 상사(上司)에게 바치고 있으니 제주의 몇가지 약재쯤은 사헌부의 감찰이 없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듣자니 감찰이 쓰는 약이 지나치게 많고 그 밖에 각종 책응하는 물건도 많아 1년을 통산하면 공물주인들이 쓰는 돈이 자그마치 수백냥이나 된다고 합니다.¹⁴⁰⁾

나) 채소와 과일의 공물(貢物)은 그 폐단이 가장 크다. 표고(藁古)와 진자(榛子) 같은 것은 더구나 드문 종류인데, 그 폐단은 익히 안다. 모두 공진하는 것을 면제시키고 경무(京貿)로 대응하게 하여 외읍(外邑)에 사는 백성으로 하여금 자성(慈聖)

140) 『비변사등록』 숙종 16년 9월 6일.

의 유덕(遺德)을 모두 알게 하라.¹⁴¹⁾

다) 제향(祭享)에 쓰이는 비자(榧子)·표고(蓂古)는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하던 것인데, 정봉(停封)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마땅히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공가(貢價)를 주어 진배(進排)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헌(貢獻)은 비록 정지하였으나, 제물(祭物)을 어떻게 이와 같이 하겠는가? 하고, 정봉하지 말라는 것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명하였다.¹⁴²⁾

라) 신이 지난해에 북영(北營)을 맡고 있을 적에, 녹용 한 대(對)의 값을 80냥으로 정했었는데 요즘에는 4, 5백 냥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가 심약(審藥)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북지(北地)의 녹용은 봉진을 허락하지 않고 곧장 본값으로 징납하는데, 각 고을에서 나오는 데가 없고 보니 부득불 해마다 민간에다 강제로 떠맡기고 있습니다. 불가불 한 차례 당착하여 간악한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감진 어사(監賑御史) 정대용(鄭大容)에게 물으니, 대용이 대답하기를, 녹용의 폐단은 오로지 양수(兩數)가 많은 것이 원인입니다. 만약 3, 4냥 이상으로써 예에 따라 봉진하게 한다면, 값이 불어나게 될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공납하는 녹용은 곧 약재 가운데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데, 그 폐단을 해결하는 방안 때문에 누차에 걸쳐 신칙하는 하교를 내리게 하는가. 한 해 두 해 벌써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이른바 ‘조령(朝令)’이니 ‘도계(道啓)’니 하는 것들이 죄다 형식이 되고 말았다. 이제 와서 한 대에 수백 냥 한다는 설이 한술 더 떠 6백 금이나 된다고 한다. 먼저 이 일부터 마을을 다해 시행토록 하라고 하였다.¹⁴³⁾

141) 『영조실록』 권 90, 영조 33년 7월 16일, 「菜果之貢, 其弊最多. 如蓂古榛子, 尤是稀種, 熟知其弊, 竝命除供代用京貨, 使外邑之民, 咸知慈聖遺德」.

142) 『영조실록』 권 113, 영조 45년 7월 10일, 「祭享所用榧子·蓂古, 乃濟州封進者, 而有停封之教, 宜令惠廳, 給貢價進排. 上曰 貢獻雖停, 而祭物豈若此 命勿停封, 永爲定式」.

143) 『정조실록』 권 28, 정조 13년 8월 6일, 「臣頃年待罪北營時, 鹿茸一對價, 定以八十兩, 近爲四五百兩云. 此莫非審藥居間操縱. 北茸則不許封進, 直以價本徵納, 而各邑既無出處, 則不得不年年勒責於民間. 不可不一番刷滌, 以防奸竇. 上問監賑御史鄭大容. 大容對曰 茸弊專由於兩數之高重. 若以三四兩以上, 依例封進, 庶無價增之患. 教曰…貢茸一事, 是不過藥料中微物, 而以其救弊之方, 屢勤飭教, 一年二年, 積有年所, 所謂朝令也. 道啓也, 皆歸文具. 到今一對數百兩之說, 變爲六百金」.

위 사료 가)에서는 제주의 약재 진상에 대한 폐단에 대해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주의 진피 등 몇 개의 종을 한번만 청대하고 그 뒤로 청대하여 출납한 일이 없는데 월령 감찰로 인해 공물 주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에서의 약재는 사헌부 감찰이 없이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기 집에 놔두고 사사로운 쓰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많은 수량과 각종 책응하는 물건도 많아 공물주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료 나)에서는 표고의 진상에 많은 폐단이 있어 모두 면제시키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사료 다)에서는 제주에서 바치는 비자와 표고가 제향으로 쓰이므로 진상을 정지하였던 것을 다시 봉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사료 라)에서는 심약의 착취로 백성들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비록 사료 라)에 녹용의 폐단은 타 지방의 일로 제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납하는 약재 가운데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 녹용을 민간에 강제로 떠넘기고 거기다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그 값을 터무니없이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조선후기 진상의 폐단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제주는 말과 굴의 봉진 외에도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으로 해산물과 자연환경에 의하여 약재류가 많이 생산되어 해산물 진상과 약재의 진공 또한 종류가 많았다.

이 외에도 매, 노루, 사슴꼬리, 녹피 등 여러 종류가 바쳐져 이에 따른 폐해를 알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가) 제주(濟州)에서 흰 사슴을 바쳤다.¹⁴⁴⁾

본주(本州)에 바치는 진주배(眞珠盃)와 앵무배(鸚鵡盃)는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감해 주도록 하소서.¹⁴⁵⁾

나) 제주 지역의 폐막은 빠짐없이 서계를 하였고 비국이 이미 회계(回啓)를 하였

는데, 관원의 체임시진상(進上)은 곧 타도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그 가운데 통개(筒介)가 20부(部)·녹비(鹿皮)가 50령(令)이고 장식을 하는 데에 쓰이는 놋쇠 등 물품을 모두 서울에서 무역하고 있으므로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삼명

144) 『세조실록』 권 32, 세조 10년 2월 2일, 「濟州獻白鹿」.

145) 『성종실록』 권 113, 성종 11년 1월 24일, 「本州進眞珠, 鸚鵡盃, 其弊不貲, 請減之」.

일(三名日) 진상에 통개가 들어 있으니, 체임시 진상에는 이 물품을 없애주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이 밖에 백납(白蠟)·무회목(無灰木) 따위들도 도중(島中)의 폐가 되고 있는데, 무회목은 애당초 본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곁에 떠내려오는 것을 주은 것이므로 더욱 몹시 희귀합니다.¹⁴⁶⁾

다) 제주(濟州)에 있을 적에는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진기(珍奇)한 물건을 모두 찾아 모으고, 백성의 재물(財物)을 약탈(掠奪)하여 자기(自己)를 살찌운 것은 우선 두고서 논하지 않더라도 요로[要律]에 아첨하는 일은 무부(武夫)보다도 심하였습니다. 종모(驥帽)·종립(驥笠)과 껍기(貝器)·껍영(貝纓)을 달마다 증유(贈遺)하였으니, 신의 이른바 ‘교묘히 뇌물을 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¹⁴⁷⁾

라) 탐라(耽羅)에서 진상 물품을 압령(押領)하여 오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표류하다가 3개월 만에 왔으니, 그 돌보아 줌이 마땅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옷감을 주어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¹⁴⁸⁾

위 사료로 보아 가)에서는 흰사슴과 앵무배, 통개, 녹비 등 다양한 종류가 진상으로 바쳤음을 알 수 있겠다. 특히 사료 나)와 다)에서는 본도에서 잘 나지 않는 물목과 진기한 물품 진상에 따른 폐해를 기록하고 있다. 사료 라)에서는 진상물을 실은 배가 표류하여 3개월 만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거리 수송에 따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제주에서 바쳤던 진상은 종류와 수량이 많았고 삼명일, 목사의 도입 혹은 체임시 진상을 포함하면 종류는 더욱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왕의 특별배려로 감하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영조 때 모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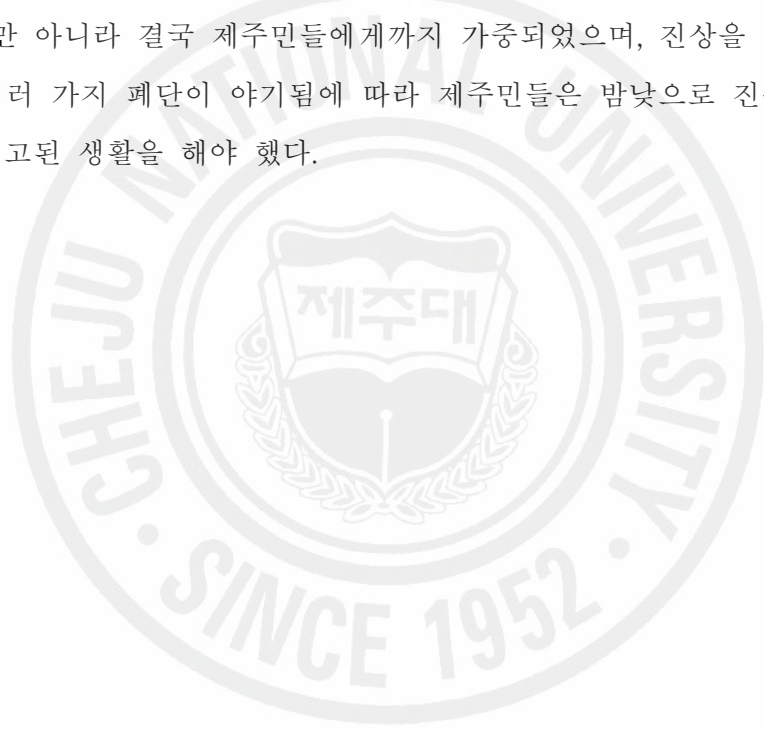
146) 『헌종실록』 권 25, 현종 13년 2월 12일, 「爾奉使濟州而還, 書啓之外, 更無可言者乎 夏對曰 其處弊瘼, 盡爲書啓. 備局旣已回啓, 而官員之遞任進上, 乃他道所無之規. 其中筒介二十部, 鹿皮五十令, 而如粧飾所用鉅錫等物, 皆質於京中, 故其弊不少. 三名日進上, 旣有筒介則遞任進上, 雖無此物, 庸何妨乎 此外如白蠟, 無灰木, 亦是島中之弊, 而無灰木元非本島所產, 乃拾得於海濤浮來者, 故尤極稀貴矣」.

147) 『숙종실록』 권 45, 숙종 34년 12월 14일, 「其在濟州則土產珍奇, 竝行搜括, 剝割肥己, 姑捨勿論, 詔事要津, 甚於武夫. 驥帽, 驥笠, 貝器, 貝纓, 逐月贈遺, 臣所謂巧行包饋者此也. 及授本職, 益肆姦婪, 人蔘封進之際, 點退多方, 橫斂無藝, 御供雖減, 私捧倍蓰」.

148) 『영조실록』 권 58, 영조 19년 12월 27일, 「耽羅進上領來之人, 漂流海中, 三朔後來, 其宜顧恤. 令該曹, 給衣資以遣」.

탄신일 외에 정조, 동지의 방물을 감하도록 한 것과¹⁴⁹⁾ 흉년으로 삼명일 방물과 물선도 진상을 정지하는 조치가 있었다.¹⁵⁰⁾ 또 사슴꼬리의 진공 정지¹⁵¹⁾와 재해가 있는 해는 정지하거나 감하도록 하였다. 정조때에도 심한 흉작으로 방물의 진상을 탕감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진상물 상납 과정에서 표류되거나 늦어져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거나, 순조때 당금꿍이 정해진 수를 채우지 못하여 후에 채워 봉진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감한 것으로 진상이 완전히 감면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많은 진상의 종류와 수량은 18세기까지 주로 목자, 포작인, 잡녀, 약한 등의 고역 담당자들에 의해서 직접 충당되었으나 진상의 막중한 부담은 고역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결국 제주민들에게까지 가중되었으며, 진상을 빙자한 수탈과 강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야기됨에 따라 제주민들은 밤낮으로 진상물을 마련하느라 매일 고된 생활을 해야 했다.



149) 『영조실록』 권 15, 영조 4년 정월 5일, 「誕日外正朝、冬至方物, 其令姑減」.

『비변사등록』 영조 4년 1월 7일, 「三名日 進上方物中, 誕日方物外 正朝冬至方物 姑減事分付」.

150) 『영조실록』 권 110, 영조 44년 5월 19일, 「濟州三名日方物物膳, 限今年停封, 柑橘外朔膳, 亦限今年減半, 以北路及濟州年荒也」.

151) 『영조실록』 권 113, 영조 45년 8월 9일, 「命停耽羅進貢鹿尾」.

V. 맺 음 말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제주에서 중앙에 매해 바쳤던 진상의 품목과 수량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폐단을 살펴보았다. 제주의 진상제도는 조선후기 더욱 확대되고 체계화되면서 제주의 주요한 수취항목이었다. 이에 따라 진상과 관련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우마와 감귤, 해산물, 약재 등이 제주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물목으로 이에 따른 폐단이 심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장에서는 앞서 살펴 본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주에서는 진상을 위해 많은 물목과 수량이 징수되었다.

제주의 진상은 태종 8년(1408) 공부가 정해진 그 다음해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에 진상물을 헌납하였다. 제주에 부과되었던 것은 물선진상, 방물진상, 제향진상, 약재진상 등이 있었고 이 외에도 목사의 도입 및 체임진상, 판관과 각 현감의 체임진상이 있었다. 이때 진상으로 바쳤던 종류는 공마와 사슴, 감귤, 전복, 오징어, 생선, 미역, 표고 등 많은 품목이 있었는데 이 중에 많은 수량을 바친 대표적인 품목이 말과 감귤, 해산물, 약재류였다.

첫째, 말은 고려시대부터 진헌이 실시되었으며,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토산물의 하나였다. 조선후기 말의 봉진은 세공마, 3명일 진상마와 연례진상마, 식년공마, 체임진상마, 노태마, 흥구마 등이 바쳐졌다. 이러한 공마 진상은 목자들에게는 고역이었으며, 특히 진상마가 죽었을 경우 가죽을 진헌하는 동색마로 인해 제주의 목자들 중 대부분이 파산을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목자들은 역을 면하기 위해 도망가는 자가 많아 목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목자 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둔에서 기르는 말도 진상에 충당되기도 하였고, 사사로이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일반민들의 부담도 컸다.

둘째, 귤은 제주의 특산물로 진상귤의 종류는 금귤, 유감, 동정귤, 청귤, 산귤, 감자, 유자, 당유자, 왜귤 9종류가 있었다. 조선전기 24운에 걸쳐 봉진되었으나

조선후기에는 20운으로 감하여졌다.

본래 민간에서 재배하는 것은 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초부터 지방관들이 민가의 꿀을 진상한다고 가져가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였고, 감꿀봉진의 부담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에 민가에서는 꿀나무 심기를 점차 꺼려하였고, 나무를 일부러 잘라버리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끓는 물을 부어 죽여 버린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제주 곳곳에 과원을 설치하여, 군사들로 지키게 하여 공과원 증설로 민가의 감꿀을 징수하는 폐단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민간에서 재배하는 감꿀에 대한 진공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자연적인 재해로 진상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운반 도중에 썩어 없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과원직의 광범위한 피역으로 민간 과원에서 진상을 충당하였고, 이에 제주민들의 부담과 꿀 재배 기피 현상은 심화되었다.

셋째, 해산물로는 전복과 오징어가 대표적이며 전복의 종류는 추복·인복·조복이다. 해산물 진상은 매해 2월부터 9월까지 정기적으로 바쳤다. 전복 채취를 담당하던 포작인들은 선격의 역까지 담당하면서 점차 부담이 가중되자 역을 피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도망가는 자가 많아졌다. 이에 포작인들이 담당하던 전복 조달을 잡녀가 대신하게 되었다. 포작인과 마찬가지로 잡녀들도 과중한 역을 견디지 못하여 피역을 도모하여 이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해산물 진상 또한 사사로이 취하여 진상 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제주민들에게도 부과하게 하였으며 그 고통이 매우 컸다.

넷째, 약재진상의 품목으로 영릉향, 백록, 석결명, 해동피, 감자, 반하, 청피, 우황, 굴핵, 석곡, 치자 등이 있었다. 현종 13년 삼읍회춘국(三邑回春局)이라는 약국을 설치하고 약한(藥漢)으로 약재의 채취 및 진공을 담당하게 하였고, 약포를 두어 진상에 필요한 약재를 재배하게 하였다. 약재진상은 채취시기와 진상 방법도 까다로웠고, 매해 4월, 8월, 9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진상하였다.

약재진상의 수량과 각종 책응하는 물건이 많았으며 사사로이 쓰거나 민간에 강제로 떠넘기는 등 폐단이 많아 약한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외에도 매, 노루, 사슴꼬리, 호피, 늑피 등의 여러 종류와 수량이 진상되었다. 이러한 진상 품목의 다양화와 많은 수량은 목자, 과원직, 포작인, 약한 등 진

상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과중한 역을 견디지 못해 많은 피역을 함으로써 진상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또한 많은 종류와 수량은 진상물 담당자 외에 제주민들에게도 착취와 강요 등으로 봉진케 하여 매우 고된 생활을 해야 했다.

게다가 공선(貢船)의 표류와 침몰 등으로 인해 진상 수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상하는 경우 다시 추징하는 민폐와 진상물 시기 외에도 농사철에 진상물을 강요하거나 생산되지 않는 귀중한 물품을 구해야 하는 폐단, 그리고 공적(公的) 일을 구실로 수탈을 감행하여 제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진상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나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말과 감귤을 제외한 그 외에 제주에서 바쳤던 진상의 많은 물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으며 제주지역의 진상이 제주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폭 넓게 연구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1. 문헌자료

-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제주읍지(濟州邑誌)』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탐라사례(耽羅事例)』
『탐영사례(耽營事例)』
김상헌, 『남사록(南槎錄)』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이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이원진, 『탐라지(耽羅志)』
이형상,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이형상, 『남환박물관(南宦博物)』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

2. 연구논저

1) 단행본

- 강진철, 『高麗土地制度史研究』, 일조각, 1980.
고창석 외, 『(譯註)耽羅志』, 푸른역사, 2002.

국립제주박물관편,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200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조선후기의 경제』, 탐구당, 2003.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I -지세편-』, 일조각, 1984.

_____,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Ⅱ』, 일조각, 1987.

_____,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Ⅲ』, 일조각, 1988.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연구』, 집문당, 1997.

김종업, 『탐라문화사』, 조약돌, 1986.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世起文化社, 1982.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마문화연구총서』 V,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박경희, 『제주바다와 「미역·전복」』, 제주도, 1972.

박종희, 『한국약초도감』, 신일상사, 2004.

송수환, 『조선전기 왕실재정 연구』, 집문당, 2000.

안덕균, 『세종시대의 보건위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임응규·유징자, 『민간약초』, 오성출판사, 1989.

장동표, 『조선후기 지방재정연구』, 국학자료원, 1999.

제주도 편, 『제주감귤』, 제주도감귤과, 1985.

제주시 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제주목사』, 제주시, 2005.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편, 『제주시 수협사』,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1989.

다가와고조(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 研究』, 동양문고, 1965.

2) 논문 및 기타

강만생, 「韓末 日本의 濟州 어업침탈과 島民의 대응」 『濟州道研究』 3, 제주도 사연구회, 1986.

강만익,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 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고석규, 「16·7세기 貢納制 改革의 方向」 『韓國史論』 12, 1992.

- 고창석, 「朝鮮後期 濟州 供彼錢의 設置와 弊端」『濟州道史研究』 2, 제주도사연구회, 1992.
- , 「元·明交替期の 濟州島」-牧胡亂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耽羅文化』 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권인혁, 「朝鮮後期 地方官衙 財政의 運營實態-濟州의 <事例>를 중심으로」『耽羅文化』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권인혁, 「조선후기 제주도사 연구현황과 과제」『濟州島研究』 3, 제주도연구회, 1986.
- 김동전, 「濟州島의 貢物進獻에 대한 考察-朝鮮王朝를 中心으로 -」『濟州史學』 창간호,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1985.
- , 「조선시대 제주도의 군현구조와 지배체제」『濟州道史研究』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 , 「18·19세기 沓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濟州 大靜縣 戶籍中草의 분석-」『역사민속학』 3, 1993.
- 김오순,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남도영, 「朝鮮時代の 地方馬政組織에 對한 小考」『史學研究』 18, 한국사학회, 1964.
- , 「韓國馬政史」『마문화연구총서』 I, 마사박물관, 1996.
- , 「濟州島牧場의 歷史的 意義」『문화유산해설사교육』, 자연사박물관, 2004.
- 박도식, 「조선초기 국가재정의 정비와 공납제 운용」『관동사학』 7, 관동사학회, 1996.
- 박찬식, 「『耽羅巡歷圖』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耽羅巡歷圖研究論叢』,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 ,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耽羅文化』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_____, 「17·8세기 濟州道 牧子の 실태-李衡祥의 「耽羅狀啓抄」를 중심으로-」 『濟州文化研究』, 제주문화, 1993.
- 박현순, 「16~17세기 貢納制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 송찬식, 「산남방물지공고」 『진단학보』, 진단학회, 1974.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耽羅文化』 2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오미일, 「18·19세기 貢物政策의 變化와 貢人層의 變動」 『韓國史論』 14, 1986.
- 오윤옥, 「濟州道 柑橘栽培의 起源과 分布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원창애, 「朝鮮時代 濟州島 馬政에 대한 小考」 『濟州道史研究』 4, 제주도사연구회, 1995.
- 이승녕, 「濟州道 柑橘攷」 『韓國의 傳統的 自然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耽羅文化』 2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 정미정, 「朝鮮後期 濟州果園 설치와 柑橘進上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형우, 「대동법에 대한 一研究」 『史學研究』 2, 한국사학회, 1958.
- 조성윤·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耽羅文化』 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진영일,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황선영, 「朝鮮初期 進上制 研究」, 부산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도쿠나리 가이시코(徳成 外志子), 「조선후기의 貢物質納制-공인연구의 前提作業으로-」 『歷史學報』 116, 1987.
- 나가모리 미쓰노부(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耽羅文化』 2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진축삼(陳祝三), 「蒙元和 濟州馬」 『耽羅文化』 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